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김 영 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이 승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연구위원)

초빙연구원: 이 동 석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위촉연구원: 이 화 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위촉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최근 몇 년간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 대상의 학대 사건이 보도되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로, 심각한 학대사건이 알려질 때는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과 분노가 일어나지만,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 해결 역시 아직은 요원해보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장애여성 학대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자폐성, 지적, 정신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요인으로 인해 학대에 상대적으로 더욱 더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분석과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여성 안에서도 장애유형 및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갈 길이 매우 먼 지금, 이 연구가 치열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이후 더 많은 연구들이 근간이 되어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 경 희

Contents

I 서론_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II 장애여성 학대 관련 법·제도 및 현황_13

1.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13
2. 장애인 학대 관련 법령 및 정책	14
1) 장애여성 학대 방지 관계 법령	14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방지 정책	20
3) 한계 및 시사점	25
3.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쟁점	27
1)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	27
2) 지역사회 내 학대사건	39
3)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39
4) 시사점	41

Contents

Ⅲ 서울시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실태: 상담통계 분석_45

1. 분석대상	45
2. 서울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학대유형별 학대 피해 실태 ...	46
3. 서울시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피해 실태	49
1) 성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가 압도적(80.5%)	49
2) 성적 학대의 가해자 : 지인 52.2%	52
3) 성적 학대의 내용 :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	53
4) 사후조치	55
4. 서울시 장애여성의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실태	56
1)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 69.7%	56
2)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가해자 : 지인 42.4%, 가족 또는 친척 33.3%	59
3)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내용 : 횡령·배임이 다수	59
4) 사후조치	61
5. 서울시 장애여성의 신체적 학대 피해 실태	62
1)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	62
2)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 : 가족 또는 친척이 다수(59.1%)	64
3) 신체적 학대의 내용 : 폭행이 다수(90.9%)	65
4) 사후조치	67
6. 서울시 장애여성의 방임·유기 피해 실태	68
1) 방임·유기 학대의 피해자 : 지적장애에만 발생	68
2) 방임·유기 학대의 가해자 : 시설관계자가 다수	70

Contents

3) 방임·유기의 내용 : 교육서비스 결여	70
4) 사후조치	71
7. 서울시 장애여성의 심리적 학대 피해 실태	72
1)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 30대 연령이 다수	72
2) 심리적 학대의 가해자 : 가족 또는 친척	74
3) 심리적 학대의 내용 :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75
4) 사후조치 : 본인이 상담 신청(55.6%)	77

IV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체계의 문제 : FGI결과 분석 81

1.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관련자 면접 개요	81
2. 면접분석결과	83
1) 학대 실태	83
2) 학대의 원인	87
3) 예방 및 신고체계의 문제	93
4) 지원체계의 문제	97
5) 정책요구	100
3. 요약 및 시사점	108
1) 요약	108
2) 시사점	110

Contents

V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정책방안_119

1. 정책의 기본 방향 :	119
2. 정책 과제	121
1)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 예방·대처 역량 강화	121
2) 정신적 장애여성 가족 지원	123
3)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의 학대 예방·대처 역량 강화	124
4)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26

참고문헌_129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1	2차자료 분석 내용	8
표 I-2	FGI 참여자 및 조사내용	9
표 II-1	학대 유형	14
표 II-2	보건복지부 주요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	21
표 II-3	서울시 주요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	23
표 II-4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	25
표 II-5	서울시 정신보건 시설 현황 2016.10기준	25
표 II-6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체 상담 중 학대 빈도 및 비율	27
표 II-7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별 학대 사례 상담 빈도 및 비율	28
표 II-8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유형별 학대 사례 상담 빈도 및 비율	28
표 II-9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별 학대 사례 상담 빈도 및 비율	29
표 II-10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연도별 상담 건수	30
표 II-11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학대 상담유형별 현황	30
표 II-12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학대 관련 상담 세부내용	31
표 II-13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별 상담 빈도 및 비율	32
표 II-14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별 상담 빈도 및 비율	33
표 II-15	2008년~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별 상담 빈도 및 비율	34
표 II-16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35
표 II-17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장애유형별	35
표 II-18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36
표 II-1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37
표 II-2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38
표 II-2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 - 장애유형별	38
표 III-1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46
표 III-2	장애유형별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47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II- 3	학대유형별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48
표 III- 4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학대유형	48
표 III- 5	장애유형별 성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49
표 III- 6	성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50
표 III- 7	성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51
표 III- 8	정신적 장애여성 성적 학대 피해자 현거주지	51
표 III- 9	성적 학대의 가해자	52
표 III- 10	성적 학대의 내용: 장애유형별	53
표 III- 11	성적 학대의 발생장소	54
표 III- 12	성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55
표 III- 13	성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56
표 III- 14	재정적·물질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57
표 III- 15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58
표 III- 16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58
표 III- 17	지체, 지적 장애여성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자 현거주지	59
표 III- 18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가해자	59
표 III- 19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내용	60
표 III- 20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발생장소	60
표 III- 21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61
표 III- 22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61
표 III- 23	장애유형별 신체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62
표 III- 24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63
표 III- 25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63
표 III- 26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 현거주지	64
표 III- 27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	65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III- 28	장애유형별 신체적 학대의 내용	65
표 III- 29	신체적 학대의 발생장소	66
표 III- 30	신체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67
표 III- 31	신체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68
표 III- 32	방임·유기 관련 상담사례: 장애유형별	68
표 III- 33	방임·유기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69
표 III- 34	방임·유기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69
표 III- 35	방임·유기 장애여성 현거주지	69
표 III- 36	방임·유기의 가해자	70
표 III- 37	방임·유기의 내용: 장애유형별	70
표 III- 38	방임·유기의 발생장소	71
표 III- 39	방임·유기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71
표 III- 40	방임·유기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71
표 III- 41	장애유형별 심리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72
표 III- 42	심리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73
표 III- 43	심리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현거주지	73
표 III- 44	심리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74
표 III- 45	심리적 학대의 가해자	74
표 III- 46	심리적 학대의 내용: 장애유형별	75
표 III- 47	심리적 학대의 발생장소	76
표 III- 48	심리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76
표 III- 49	심리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77
표 IV- 1	FGI 참여자의 일반적특성	82
표 IV- 2	면접결과 분석 요약	109
표 V- 1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 방지 정책 과제	121

연구요약

1. 연구배경

-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학대에 취약하며, 학대의 내용에 있어서도 남성과는 차이가 있음.
- 기존 실태조사들에 따르면 장애인구 대비 학대비율은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대의 강도 역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성별·장애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장애인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고안한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장애 ‘여성’으로서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이하 ‘정신적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집단에 집중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연구목적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 피해 실태와 특성 파악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제언
- 연구내용
 - 장애인 학대 관련 법·제도·정책 검토 및 장애인 학대 현황 파악 :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정의,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현행 정책 검토, 장애여성 학대 실태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실태 분석 : 서울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 학대유형별 피해 상담 빈도와 피해 내용 분석, 서울시 장애인 학대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파악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예방 정책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계 법령 및 관련 정책, 기존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장애인 학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차자료(상담통계) 조사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시장래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3개 기관의 최근 3년(2013년~2015년) 학대피해 상담사례 통계정보 통합·재구성 뒤 분석 (총 192명)
 - 피해유형 및 빈도, 피해자 연령, 장애정도, 피해 장소, 가해자 유형, 학대 내용, 발생장소, 지속기간 및 횟수, 사후조치 등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피해자구제 관련 조직 종사자 총 12명
 - 서울시 장애여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현황, 장애인 학대 사전 예방 체계,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사례 특성, 지원체계 개선요구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방향 검토 및 의견 수렴

4. 주요 연구 결과

- 2013년~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특별시장래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한 서울시 장애여성은 각각 22명, 67명, 103명으로 총 192명임.
- 장애유형으로는 지적 장애(134건, 69.8%)>지체장애(15건, 7.8%)>정신장애(13건, 6.8%)순이며, 정신적 장애여성의 상담사례는 총 14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77.1%임.
- 학대유형 면에서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와 재정적·물질적 학대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적 학대의 경우 총 113건으로 58.9%이며, 재정적·물질적 학대는 총 33건으로 17.2%임.

□ 성적 학대

-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압도적(80.5%)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성적 학대 상담사례는 총 113건 중 지적 장애(91건, 80.5%)>정신장애(7건, 6.2%)>뇌병변 장애(6건, 5.3%)의 순으로 나타남.
- 가해자 중 지인이 52.2% : 성적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은 ‘지인’ 으로 나타남. 113건 중 59건으로 전체 52.2%를 차지하였으며, 뒤 이어 ‘모르는 사람’ (18.6%), ‘가족 또는 친척’ (11.5%) 순.

□ 복합적 학대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의 경우 한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경제적 착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학대의 원인

- 영원한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 자기결정 경험의 부족 :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을 받고 자기결정 경험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의사소통과 신고에의 어려움을 겪게 됨.
-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 :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가족, 시설 내에서 가족, 종사자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즉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대가 쉽게 발생하게 됨.

□ 예방 정책의 부재

- 서울시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 사후 대책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 이후 피난처 부재

- 정신장애인의 경우 학대피해 이후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긴급 피난처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 외에는 갈 곳이 없음.

5. 정책제안

	사전예방 단계	확인 및 대응 단계	사후지원 및 재발방지 단계
정신적 장애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인권교육 개선 및 확대 ■ 특수학교 교육내용 개선 ■ 성인기 정신적 장애 여성을 위한 성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자 쉼터 확대운영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위기가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종사자 학대 예방교육 개발·강화 ■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연계 체계화 ■ 학대피해 관련기관 아웃리치 증대 	
지역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시 불이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장애인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실시 ■ 관계법령 개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까지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 신안군 염전 노예사건, 서울시 도봉구 송전원 사건과 인강원 사건, 서울시 동작구 밥집노예 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상담·현장개입·피해자구제 등의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인인권교육 외의 사전예방적 조치는 미미한 형편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실태 관련 통계 역시 한정적 영역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성별 요소, 장애유형 요소, 가정·시설·지역사회 등 장소적 특성, 연령 요소 등을 반영한 대응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는 그 취약성으로 인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한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학대에 취약하며, 학대의 내용에 있어서도 남성과는 차이가 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피해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특히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항목에서 그러하다. 전국 기준으로 장애남성의 경우 가족 내 차별·폭력 경험이 ‘자주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1.1%, ‘가끔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5.5%이나, 장애여성의 경우 ‘자주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1.2%, ‘가끔 있다’로 응답한 비율

은 7.0%로 나타났다. 또, 장애남성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3%인데 비해, 장애여성은 3.0%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하여 거의 7배에 달하고, 대처방법의 다수가 ‘참는다’ (46.1%),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 (16.3%)라는 사실이다(김성희 외, 2015).

성별 특성에서 나아가 장애유형별 특성에 의한 학대 차이와 취약성도 나타난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 대비 학대비율은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대의 강도 역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경우 가족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김성희 외, 2015)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은 매우 낮으나 장애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 여러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10.7%), 언어장애(5.5%) 및 지적장애(4.9%)의 경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성별과 장애유형 등 여러 요소에 따른 이질성이 강하다. 그럼에도 기존 장애인 학대 방지 정책은 이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내용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점검 체계나 장애인 인권교육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학대 방지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신적 장애여성의 경우 학대상황에 처하더라도 위기상황을 인지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데, 기존 장애인 학대 관련 정책에서는 대개 학대사태가 이미 발생한 후 피해자구제 등을 통한 사후적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어 예방적 관점에서의 정책 조명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구별적 요소 중 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장애 ‘여성’으로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이하 ‘정신적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집단에 집중하고자 한다. 서울시 장애인 학대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취약한 집단인 장애여성, 그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 학대정책 수립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탐색적 연구이다.

첫째,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 피해 실태와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서울시에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탐구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법·제도와 정책 검토,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 실태 분석,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정책방안 제언이다.

첫째, 장애인 학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파악한다. 관계 법령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현행 정책 검토를 통하여 정책을 진단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장애여성 학대 실태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에 앞서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도록 한다.

둘째,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실태를 분석한다. 현재 장애인 학대 실태에 관련한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 장애인 학대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서울시장래인인권센터·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13년~2015년 상담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이 자료를 통해 서울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 학대유형별 피해 상담 빈도와 피해 내용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인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피해자 구제 기관 실무자를 만나, 장애여성 학대피해의 특성과 서울시 장애인 학대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예방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위의 3개 장애인 상담기관 상담사례와 FGI 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내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방지 정책의 방향 및 세부과제를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2차 자료 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1) 문헌조사

우선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관계 법령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장애인 학대 관계 법령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령, 중앙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서울시의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등의 정책을 살펴보고 기존 정책의 구체적 추진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로부터 장애인 학대 관련 내용을 수집하여 학대에 관한 일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가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하므로 그 사례의 의미를 고려하여 성적 학대에 관한 일련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 2차자료(상담통계) 분석

현재로서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망라하는 실태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각각 ‘가족 내 차별·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에 관한 항목을 두고 있으나,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나

타나는 비율이 미미하고 성별 구분이 된 항목이 많지 않아 학대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 다소 미흡하다. 오히려 서울시 내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및 장애여성 대상 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례 내역을 참고하는 편이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 접근에 유리하다. 이러한 판단에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3개 기관의 최근 3년(2013년~2015년) 상담사례 통계정보를 협조 받아 각각의 상담통계를 통일적 형식에 맞추어 통합·재구성한 뒤 분석하였다.

위 3개 기관의 상담사례 데이터가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실태를 보여주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자료로서의 한계 역시 분명함을 밝힌다. 원래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기획된 통계자료라기보다는 상담의 기록과 자료축적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장애인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어나고 있는 학대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장애남성의 상담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성별비교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3개 기관 중 하나인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며, 협조기관의 데이터 정리 시간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담자료에 의해 수집된 학대피해 장애여성은 총 192명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2명,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67명,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03명이다. 상담자료를 통해 분석한 내용은 피해유형 및 빈도, 피해자 연령, 장애정도, 피해 장소, 가해자 유형, 학대 내용, 발생장소, 지속기간 및 횟수, 사후조치 등이다.

표 1-1 2차자료 분석 내용

주제영역	세부항목
학대 피해자	장애 유형
	연령
	장애 정도
	거주지
학대 가해자	가해자 유형(피해자와의 관계)
	학대 유형(소분류)
학대 내용	발생 장소
	학대 지속기간 및 횟수
사후 조치	상담 신청자(피해자와의 관계)

(3)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2차자료 분석에서 더 나아가 학대 피해의 구체적 사례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여성 학대 방지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피해자구제 관련 조직 종사자 총 12명이다.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중심으로 FGI 참여자를 구성한 이유는 연구 대상과 주제의 특성상 피해 당사자를 직접 인터뷰하기보다 정책적 이해가 선행된 실무자의 의견에 집중하는 것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더 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터뷰는 2016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시 장애여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현황, 장애인 학대 사전 예방 체계,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사례 특성, 지원체계 개선요구 등이다.

【 표 1 - 2 】 FGI 참여자 및 조사내용

구분	소속	주요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장애여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현황 -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체계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사례 특성 - 지원체계 개선요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자치구 복지지원과	
	자치구 인권센터	
피해자 구제 관련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여성 피해자 지지체계 - 장애인 학대 사전예방체계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사례 특성 - 장애여성 학대방지 민관협력 현황 및 요구 - 지원체계 개선요구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장애여성인권단체	
	정신장애 보호시설	

자세한 연구방법은 해당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II

장애여성 학대 관련 법·제도 및 현황

1.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2. 장애인 학대 관련 법령 및 정책
3.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쟁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장애여성 학대 관련 법·제도 및 현황

II

1.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도 유사하게 행태적 분류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동석 외, 2014, p.12). 유럽의회에서는 학대를 “타인의 인권, 시민적 자유, 신체적 완전성, 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행복 및 복지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학대의 의미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며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 인한 침해 역시 학대에 포함한다(Brown, 2003).

학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하나, 대부분의 법령과 문헌에서는 행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태에 따른 학대 유형은 대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방임·유기로 나누고, 차별행위에 따른 차별적 학대와 사회구조적 또는 제도적 결함에 의한 제도적 학대 유형까지 고려하기도 한다. 각 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Ⅱ 표 II- 1 Ⅱ 학대 유형

행태에 따른 학대 유형	구체적 내용
신체적 학대	폭행, 신체적 체벌, 건강검진 접근 차별, 질병 방치, 불임수술 및 영구 피임, 개인위생 방치, 약물의 오남용, 체포, 감금 등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심리적 학대	협박, 통제, 비난, 괴롭힘, 고성, 욕설, 냉대, 따돌림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명의도용, 동의 없는 통장 관리 및 예금인출
방임·유기	불충분한 영양공급, 부적절한 냉난방, 의료보장·사회보장·교육서비스 결여
차별적 학대	인종, 성별, 성별, 성적 지향, 종교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
제도적 학대	적법절차 위반, 불법구금 등 법률, 정책, 거주시설이나 서비스제공기관의 구조 등 제도의 미비 또는 부적절한 적용으로 발생하는 학대

출처: 이동석 외(2014), p.13-16

다만, 차별적 학대 및 제도적 학대 유형은 법적·사회적 환경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여 발견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학대로 유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개개인의 학대 피해 실태를 보다 집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차별적 학대와 제도적 학대를 제외하고,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방임·유기의 다섯 가지 유형을 채택하여, 성별·연령·학대사례 발생장소·가해자 등 변인을 종합한 학대피해 지형을 그려보고자 한다.

2. 장애여성 학대관련 법령 및 정책

1) 장애여성 학대 방지 관계 법령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여성 학대 방지 관련 조항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제61차 UN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8년 비준하여,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는 장애여성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조항은 전문 q와 S, 제6조 및 제16조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학사 또는 착취의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은 각 조항의 적용과 이행의 근거가 된다. (q)호와 (s)호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폭력에 더욱 취약함을 인지하여 각국의 협약 이행 조치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 내용은 제6조 ‘여성장애인’을 만나 구체화되며, 특히 장애여성의 학대 피해에 관한 내용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여성장애인)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별에 기초한 요소를 포함하여, 가정 내외에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개호인을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방지,

인식 그리고 사례보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그리고 사회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인간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의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기소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6조와 제16조의 조문은 특히 ‘성별’ 과 ‘연령’ 을 중점을 두어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기타 조치뿐 아니라 폭력, 착취 및 학대 발생의 예방을 위한 교육, 보호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 감시, 피해자 재활 및 사회재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치를 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방지 관련 조항

국내에서는 장애인 학대 방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중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항에서 “장애인학대” 를 정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와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이하에 학대에 따른 사후관리¹⁾까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두었다. 특히 제59조의7(금지행위)에서 법령상 학대의 태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어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및 방지 조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 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신고의무자 생략)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응급조치의무 등)

1) 조문에 따라 2017.1.1. 시행 예정.

-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보조인의 선임 등)

- ①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아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

- 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²⁾

서울시 학대 방지 관계 법령

장애인 학대 방지에 관계된 서울특별시의 법령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과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두 조례 모두 포괄적인 인권 개념을 사용한다.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조치를 통해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련 조치의 마련이 실행될 수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항 제3호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정도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각각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수행 시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 ①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은 2017.1.1.부로 시행 예정이므로, 이 보고서에서 생략함.

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 관련 두 조례가 성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거나 학대 방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장애여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학대 방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출산비용의 지원과 같이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나 고용증진에 관한 내용이 주류일 수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학대 방지에 관한 내용은 추후라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방지 정책

중앙정부의 장애여성 학대 방지 관련 주요 정책

중앙정부의 장애인 학대 방지 관련 주요 정책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으로 대표되며, 크게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의 여섯 개 영역으로 나뉜다. 이 중 특히 장애여성의 학대 방지와 관련된 부분은 네 번째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과 다섯 번째의 ‘성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확충과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수화통역사 지원, 성범죄 피해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특례법 개정 추진을 내용으로 하며, 그 간 특례법 개정은 이미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서울시의 장애여성 학대 방지 관련 주요 정책

표 II- 2 보건복지부 주요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현재 전국 10개 지소 운영 중, 향후 17개 시도·도로 확대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2.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 및 인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을 통한 정신장애 인 복지 차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 병원 및 시설 거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법」 제45조 행동제한금지(개정 2008.3.21) 및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규정 등의 개정 추진(개정 2008.3.21., 2011.8.4.)
3. 장애인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위기관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 및 정책 연구 - 연계기관 간 협조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시각화, 감각화 등) ○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 교육 및 예방교육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 별시소방재난본부. 2015 ○ 장애인위기상황대응매뉴얼 개발을위한 시범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2013.11 ○ 장애인을 위한 피난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2013.11
4.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연차적 확충('16년 11개소)_한국여성장애인연 합홈페이지 ○ 장애인 보호시설 연차적 확충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호시설 확충('12년 6개소 → ' 17년 11개소) ○ 장애유형별(지적, 시각, 청각 등) 업무매뉴얼 개발·보급('13년~) ○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양성 및 배치('12년 9명 → ' 13년 12명) 13년 이후 자료 없음 ○ 수화통역사의 성폭력피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청각·언어장애인 피해자 발생 시 수화통역사 지원
5. 성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피해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2015.7.1.시행, 2014.12.30., 일부개정) - '13년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4년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2014.시범 운영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과제
6.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p>※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www.klac.or.kr)</p>

출처: 보건복지부(2013), p.6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2016.2.29

서울시의 장애인 학대 방지 관련 정책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전년도까지 이어진 관련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 내 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체계에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를 중심축으로 시설 인권지킴이단, 자치구 인권감독관등의 조직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인 참여배심제 도입,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해왔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침해예방 체계는 크게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및 자치구 장애인인권감독관·시설별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연간 2회로 정례화하여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지적된 사항이 이행이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는 2014.10.7. 서울시 복지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9명의 위촉직 위원(보건복지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단체, 법무법인 관계자 등)으로 최초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인권증진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생활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상황을 상시로 점검하는 체계로서 2015년 9월 현재 시설이용자, 종사자, 부모·가족·옹호자, 장애인인권전문가 등 558명이 활동 중이며, ‘자치구 인권감독관’은 자치구 담당 공무원, 인권활동가, 인권변호사, 기타 장애인 인권관련자 등 179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이런 회의체 또는 상시점검체계는 각각의 모임별로 연간 1, 2회 정도의 활동이 있을 뿐이고, 주로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서 이미 발생한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장애인인권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3.12.17.부터 2016.12.16.까지 3년 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특히 거주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하여 탈시설화 논의를 전개하고, 장애인인권교육 등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담당사업의 중점은 역시 상담과 사후적 조치로서 피해자구제에 두고 있다.

서울시 정책 중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2015년 총 2건의 인권침해 정보 제공에 대해 보상금 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장애인 권익 보장 및 중점증진 분야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과제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II- 3 서울시 주요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과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찾아가는 인권교육실시 ○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시행 ○ 인권침해 및 차별상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 제도개선, 기타 홍보사업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대상 인권실태조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15)</th> <th>계</th> <th>거주(생활) 시설</th> <th>단기거주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시설수(개소)</td> <td>88</td> <td>51</td> <td>37</td> </tr> <tr> <td>이용자(명)</td> <td>3,197</td> <td>3,112</td> <td>406</td> </tr> <tr> <td>종사자(명)</td> <td>2,296</td> <td>1,890</td> <td>185</td> </tr> </tbody> </table>	구분('15)	계	거주(생활) 시설	단기거주 시설	시설수(개소)	88	51	37	이용자(명)	3,197	3,112	406	종사자(명)	2,296	1,890	185
구분('15)	계	거주(생활) 시설	단기거주 시설														
시설수(개소)	88	51	37														
이용자(명)	3,197	3,112	406														
종사자(명)	2,296	1,890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정례회(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상반기) - 지적사례 이행사항 중점조사(하반기) ○ 주요사례 심층재조사 실시(시·구 공무원+장애인인권센터+민간조사원)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원(인권감독관+민간조사원) 전문교육 ○ 조사결과에 따른 사례별·대상별·시설별 맞춤 후속 조치 ○ 장애인거주(생활, 단기거주)시설 내 인권상황 상시점검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599명) - ‘자치구 인권감독관’ 운영(176명)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인참여배심제 도입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전용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보호시설 1개소 정원 15명, 종사원 4명)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보호시설 1개소 정원 10명, 종사원 3명; 상담소 4개소: 이용시설, 종사원 4명) ○ 장애인전용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권침해피해자 임시거주시설(인권침해 장애인쉼터 신설 1개소: 정원 5명; 지정시설 3개소: 시설당 정원 2명)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 시스템 운영, 상시 신고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전화 또는 방문신고 처리 ○ 자치구 내 장애인 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거주시설 관할 자치구 별 인권전문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5명 내외) ○ 시설 내 장애인인권지킴이단 활동(장애인거주시설 51개소 시설 별 시설이용자, 종사자, 이용자 가족, 인권전문가 등 5~20명으로 구성)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 서울시소방재난본부 2014.	지체장애인활동보조인,보호자,소방공무원 개별화된 맞춤형 매뉴얼, 기초자료, 지체장애유형과 재난유형특성을 동시에 고려함, 지체장애인의 재난의 취약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출처: 서울시(2015.2), p.9

서울시 장애인 이용 시설 현황

서울시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여 총 594개소이며, 정신 보건 시설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하여 총 143개가 운영 중이다.

【 표 II- 4 】 서울시 장애인시설 현황

시설구분 / 총계	공동생활 가정	직업 재활 시설	주간 보호 시설	복지관	거주(유형별 * 중증 * 영유아)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수화 통역 센터	의료 재활 시설	재활 체육 시설
594	180	123	121	46	45	40	26	6	7

출처: <http://disability.seoul.go.kr/>

【 표 II- 5 】 서울시 정신보건 시설 현황 2016.10기준

시설구분 / 총계	광역정신 건강증진 센터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	지역정신 건강증진 센터	정신 요양원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사회 복귀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아이존
143	1	1	25	3	4	194	4	10

출처: <http://disability.seoul.go.kr/>

3) 한계 및 시사점

한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장애여성이 ‘장애’와 ‘성별’에 의한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여성의 학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시행계획의 세부시책으로서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결

국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피해자 지원으로서 여성전용시설과 장애인전용시설의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학대 대응 정책은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상담·현장개입·피해자구제 등의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며, 장애인인권교육 외에 학대에 대하여 특정한 사전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는 체계가 부실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를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시행하여 재가 장애여성 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시설 인권지킴이단’, ‘자치구 인권감독관’ 등의 점검체계도 주로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자 전체가 거주시설 외 장애인 학대 방지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모임으로서의 성격이 떨어지고, 장애여성의 ‘여성’으로서의 특성에 대하여 따로 인식할 기회도 적다.

장애여성의 경우 어릴 때부터 사회적 배제를 습관적으로 받아오으로써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고, 타인에 대한 의존적 경향이 장애남성보다 높을 가능성이 큼에도 그러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성별 특성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와 같은 장애유형 특성과 융합되면, 장애여성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에 더욱 어려워지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 학대의 형태가 신체적·성적 학대와 같이 외부로 드러나는 유형이 아닌 경우는 타인에 의한 인지도 어렵고, 외부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신체적·성적 학대에 수반되는 정신적·정서적 학대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거주시설이 아닌 재가 장애여성의 경우 이러한 학대는 가정 내 또는 지역사회 내의 일상에서 닥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테면 ‘신안염전 노예 사건’과 같이 비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는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학대 사례의 구체적 특성, 즉 피해장애인의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학대 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학대 발생장소 등에 대한 성질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서울시 장애인 학대 방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사후 조치와 거주시설을 중점으로 하는 기존의 장애인 학대 방지 정책에서 확장하여, 사전예방적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에 충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장애인 학대 현황 및 쟁점

1)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학대 실태를 드러내는 통계가 부족하여 주로 상담 자료에 의존하여 학대 실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가능한 자료로는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김성희 외, 201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를 기초로 한 「장애와 학대」(이동석 외, 201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개년 상담활동 분석」(이미현, 201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4년 상담활동 분석」(이미현, 2015)이 있다.

우선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2008년~2013년 전국 상담사례 8,425건 중 학대로 규정된 3,150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동석 외, 2014)을 살펴보면, 학대유형과 학대 발생장소와 같이 성질이 다른 요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분류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신체적·성적·심리적·방임·유기적 학대의 빈도가 매우 높은 점, 시설에서의 학대 빈도가 가정에서의 학대 빈도보다 69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당시 재가 장애인의 학대에 대한 인지가 적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

【 표 II - 6 】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체 상담 중 학대 빈도 및 비율

유형	빈도(건)	전체상담 중 비율(%)	학대 중 해당 비율(%)
신체적·성적·심리적·방임·유기적 학대	1,688	20.0	53.6
재정적·물질적 학대	979	11.6	31.0
시설에서의 학대	276	3.3	8.8
가정에서의 학대	207	2.5	6.6
합계	3,150	37.4	100.0

출처: 이동석 외(2014), p.35

3)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대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나누기 보다는 신체적·성적·심리적·방임·유기적 학대와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발생장소를 시설과 가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학대 빈도 및 비율을 비교하고 있다.

2008년~2013년 동 센터의 학대 관련 상담건수를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362건으로 전체 11.5%를 차지하여 전남지역(476건, 15.1%)과 광주지역(531건, 16.9%)의 뒤를 잇고 있다.

【 표 II - 7 】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별 학대 사례 상담 빈도 및 비율

지역	일반		학대		합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등록비율(%)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서울	863	10.2	362	11.5	1,225	10.6	16.2
전남	1,359	16.1	476	15.1	1,835	15.8	5.8
광주	1,134	13.4	531	16.9	1,665	14.4	2.7
전국	8,435	100.0	3,150	100.0	11,585	100.0	100.0

출처: 이동석 외(2014), p.37

특히 학대 관련 상담건수 중 장애유형 파악이 모두 가능한 학대 관련 상담은 2,661건이었는데,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지적장애인은 1,442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아우르는 ‘정신적 장애인’ 으로는 1,749건으로 전체의 65.7%로 나타나 이 장애유형에 대한 학대사례 발생빈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I - 8 】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유형별 학대 사례 상담 빈도 및 비율

지역	일반		학대		합계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기타	26	0.4	9	0.3	35	0.4	12.5
지체	1,582	23.5	377	14.2	1,959	20.9	31.1
뇌병변	749	11.1	231	8.7	980	10.4	7.0
시각	571	8.5	79	3.0	650	6.9	19.0
청각	392	5.8	142	5.3	534	5.7	12.7
언어	82	1.2	36	1.4	118	1.3	0.7
지적	2,389	35.5	1,442	54.1	3,831	40.8	12.8

자폐성	185	2.8	114	4.3	299	3.2	0
정신	552	8.2	193	7.3	745	7.9	4.2
신장	60	0.9	21	0.8	81	0.9	0
심장	18	0.3	3	0.1	21	0.2	0
호흡기	27	0.4	5	0.2	32	0.3	0
간	3	0.0	0	0	3	0.0	0
안면	7	0.1	0	0	7	0.1	0
장루요루	6	0.1	0	0	6	0.1	0
간질	72	1.1	9	0.3	81	0.9	0
합계	6,721	100.0	2,661	100.0	9,382	100.0	100.0

출처: 이동석 외(2014), p.40-41

성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773건(24.5%)이고, 남성은 1,353건(43.0%)으로 여성이 남성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남·여 학대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여성의 경우 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여성들의 권익 옹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학대 관련 상담이 분산된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 표 II - 9 】 2008년~2013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별 학대 사례 상담 빈도 및 비율

성별	일반		학대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여성	1,809	21.4	773	24.5	2,582	22.3
남성	3,842	45.5	1,353	43.0	5,195	44.8
모름	2,784	33.0	1,024	32.5	3,808	32.9
합계	8,435	100.0	3,150	100.0	11,585	100.0

출처: 이동석 외(2014), p.43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2014년 상담자료 분석(이미현, 2015)는 센터의 상담사례에 관한 연차적 변화를 최근까지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 학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 센터의 연도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상담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동 센터와 같은 연

구소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가 각각 2013년, 2014년에 개소하여 활동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 표 II - 10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연도별 상담 건수

연도	빈도(건)
2008년	367
2009년	512
2010년	1,325
2011년	1,229
2012년	1,915
2013년	2,898
2014년	5,870
2015년	6,116
합계	20,232

출처: 이미현(2015), p.4

학대 관련 상담은 전체 6,116건의 상담건수 중 2,171건이 해당되며, 학대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가 38.4%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가 33.1%였다.

【 표 II - 11 】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학대 상담유형별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신체적 학대	899	33.1
성적 학대	183	6.7
정서적 학대	389	14.3
가혹행위	1	0
경제적 학대	1,042	38.4
유기·방임	203	7.5
합계	2,717	100.0

출처: 이미현(2015), p.27

학대 상담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성별에 따른 분류는 되어 있지 않으나,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로 분류된 낙태강요와 같은 항목, ‘성적 학대’로 분류된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항목으로부터 성별에 따른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 12 |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학대 관련 상담 세부내용

	상담유형	빈도(건)	비율(%)
신체적 학대	낙태강요, 불임시술	3	0.3
	강제입원(정신병원)	17	1.9
	폭행, 상해	257	28.6
	학대	261	29.0
	학교폭력	51	5.7
	가정폭력	219	24.4
	가정 내 감금	26	2.9
	시설 내 감금	36	4.0
	기타감금	29	3.2
	합계	899	100.0
정서적 학대	비장애학생 및 부모의 차별	5	1.3
	지역주민의 이주강요	13	3.3
	불친절 및 무시	42	10.8
	강압수사, 유도신문, 장애차별	15	3.9
	수사관의 차별발언	8	2.1
	자기결정권 침해	46	11.8
	이혼 및 별거 강요	2	0.5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	138	35.5
	놀림, 따돌림	29	7.5
	모욕	46	11.8
	명예훼손	3	0.8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42	10.8
	합계	389	100.0
가혹행위	가혹행위	1	100.0
	합계	1	100.0
경제적 학대	임금체불	125	12.0
	저임금	22	2.1
	강제노동	159	15.3
	휴대폰 명의도용	37	3.6
	대출 등 금융피해, 명의도용	70	6.7
	타의 명의도용	57	5.5
	절도	30	2.9
	사기	344	33.0

	횡령	198	19.0
	합계	1,042	100.0
유기·방임	가정 내 유기·방임	93	45.8
	시설 내 유기·방임	67	33.0
	기타 비인간적 생활환경	43	21.2
	합계	0	100.0

출처: 이미현(2015), p.28

학대로 분류된 상담사례를 포함하여 전체 상담건수의 지역별 분포 비율은 2015년에 들어와 서울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분석 역시 지역 내 장애인인권센터의 활동에 따라 인권상담 접수 및 사례지원이 활발해진 데 있다고 보고 있다.

■ 표 II- 13 ■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역별 상담 빈도 및 비율

지역	빈도(건)	비율(%)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등록비율(%)
서울	1,684	27.5	15.99
전국	6,116	100.0	100.0

출처: 이미현(2015), p.14

성별 상담유형의 특징으로는 앞서 제1장에서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다. 접수된 상담건수 총 6,116건 중 성별 파악이 가능한 5,857건 중 장애 남성은 3,712건, 장애여성은 2,145건으로 각각 60.7%와 35.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앞서 2008년~2014년까지의 동 센터 상담사례 분석에서 보듯이 장애여성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상담소로 그 사례수가 산재되고, 동 센터에서도 1차 접수 후 지역 내 전문상담소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상담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자유권리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재산권, 기타정보제공, 노동권 순이었다.

【 표 II - 14 】 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별 상담 빈도 및 비율

성별	빈도(건)	비율(%)
여성	2,145	35.1
남성	3,712	60.7
미상	259	4.2
합계	6,116	100.0

출처: 이미현(2015), p.13

장애유형별 상담 유형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에서 신체자유권리가 전체 상담의 50.3%였고, 정신장애의 경우는 기타정보제공(22.8%), 신체자유권리(22.5%) 순이었다. 지적 장애의 경우 신체자유권리(30.8%), 재산권(27.0%) 관련 상담이 많았다. 지적장애 3급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40대 당사자가 주로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체자유권리와 재산권 등을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 집단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 시민 대상의 인권침해예방 인식 확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이미현, 2015).

2008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상담사례를 기초로 한 일련의 연구를 여기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가 부재한 현재 반드시 ‘학대’에 한정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인권침해 상담사례의 분석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술할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낮은 비율만이 잡히는 결과로 인해 실제와 인식상 괴리가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상담신청을 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과 가까운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장애여성에 의한 상담신청은 2008년~2012년 845건으로 15.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964건(33.3%), 2014년 1,443건(32.1%), 2015년 2,145건(35.1%)로 그 빈도와 비율이 증가해왔다. 성폭력·가정폭력 사례의 경우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있음에도 장애여성의 상담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일면 장애인인권침해

해예방센터 또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여성의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장애여성의 상담건수 빈도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난 사실은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 표 II - 15 】 2008년~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성별 상담 빈도 및 비율

성별	2008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여성	845	15.3	964	33.3	1,443	32.1	2,145	35.1
남성	2,043	36.9	1,799	62.1	2,557	56.8	3,712	60.7
모름	4,649	47.8	195	4.7	501	11.1	259	4.2
합계	5,537	100.0	2,898	100.0	4,501	100.0	6,116	100.0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김성희 외, 2014)에서는 앞서 제1장의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장애여성 학대 관련 내용으로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의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에 대하여 장애남성의 경우 ‘자주 있다’의 응답이 1.1%, ‘가끔 있다’의 응답은 5.5%였고, 장애여성의 경우 ‘자주 있다’의 응답이 1.2%, ‘가끔 있다’의 응답은 7.0%였다. 연령별로는 17세 이하가 ‘가끔 있다’로 답변한 비율이 11.9%로 가장 높았고, 장애정도로는 중증인 경우 9.7%가 ‘가끔 있다’로 답변하였다.

【 표 II - 16 】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자주 있다	1.1	1.2	2.5	2.5	1.2	0.5	2.4	0.3	1.1	1.1
가끔 있다	5.5	7.0	11.9	8.6	6.9	4.1	9.7	3.5	5.9	6.1
없다	93.4	91.8	85.5	88.9	91.9	95.4	87.9	96.2	92.9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53,642	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39	984,935	1,533,015	257,980	2,646,064

출처: 김성희 외(2015), p.547

장애유형 중 가족 내 차별·폭력을 자주 겪는다고 응답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5.7%), 정신장애(4.8%), 자폐성장애(3.3%)이고, 주가해자는 ‘배우자’가 3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 - 17 】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정도-장애유형별

(단위: %, 명, 전국추정수 전체 2,646,064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체
자주 있다	0.4	1.2	0.4	1.2	0.0	5.7	3.3	4.8	0.7	0.0	0.7	0.0	0.0	0.0	0.0	1.1
가끔 있다	3.7	9.0	4.2	5.5	2.2	15.6	12.2	21.9	5.2	0.0	3.6	0.0	0.0	4.7	2.1	6.1
없다	95.9	89.8	95.4	93.3	97.8	78.7	84.5	73.4	94.1	100.0	95.7	100.0	100.0	95.3	97.9	9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15), p.351



【 표 II - 18 】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전국추정수 전체 183,482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진증	전체
배우자	45.0	50.5	38.1	56.4	-	5.3	7.2	23.1	22.7	-	100.0	-	-	100.0	100.0	34.1
부모	4.2	13.9	10.9	4.6	-	42.0	50.5	21.5	22.1	-	-	-	-	-	-	17.8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26.0	22.6	5.4	24.1	48.8	4.7	-	5.8	21.9	-	-	-	-	-	-	15.9
형제·자매	16.9	11.2	35.0	12.9	51.2	38.2	34.6	41.8	33.3	-	-	-	-	-	-	25.5
조부모	-	-	-	-	-	3.7	7.6	-	-	-	-	-	-	-	-	0.9
손자녀	0.9	1.8	-	-	-	-	-	-	-	-	-	-	-	-	-	0.5
배우자의 가족	4.2	-	7.5	2.0	-	0.5	0.0	4.3	-	-	-	-	-	-	-	2.6
기타	2.8	-	3.0	-	-	5.6	0.0	3.4	-	-	-	-	-	-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15), p.35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에 관하여서는 ‘있다’로 응답한 남성이 0.3%에 불과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로 격차가 있다. 연령별로는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45세~64세가 3.4%, 18세~44세 이하가 3.0%로 중장년층에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장애정도로 보아 경증의 .28%가 그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이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에 노출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표 II - 19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있다	0.3	3.0	1.4	3.0	3.4	1.6	1.4	2.8	0.6	0.5
없다	99.7	97.0	98.6	97.0	96.6	98.4	98.6	97.2	99.4	9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1,526,402	1,119,662	71,812	435,148	992,535	1,146,569	984,935	1,533,015	2,517,950	2,646,064

출처: 김성희 외(2015), p.548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 남성은 4,749명 중 89.3%가 ‘참는다’ 로 답한 반면, 여성은 33,088명 중 46.1%가 ‘참는다’ 로 답변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와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의 답변이 각각 19.3%, 1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 로 응답한 여성도 16.3%로 나타났다.



【 표 II- 20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 급)	경증 (4~6 급)	계	
무시한다	5.6	3.4	-	3.8	1.7	9.9	1.7	10.5	3.8	3.6
참는다	89.3	46.1	62.5	50.5	62.2	20.9	52.5	48.5	51.6	51.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	19.3	-	19.9	19.2	8.9	19.1	12.9	17.6	16.8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11.8	23.6	6.1	7.0	25.5	6.8	23.3	10.8	10.3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	5.2	16.3	5.6	19.8	9.9	19.1	16.0	4.8	13.3	14.9
기타	-	3.2	8.3	-	-	15.6	3.8	-	2.9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4,749	33,088	2,121	14,698	15,300	5,628	27,508	8,725	36,233	37,837

출처: 김성희 외(2015), p.548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10.7%), 언어장애(5.5%) 및 지적 장애(4.9%)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다.

【 표 II- 21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전국추정수 전체 2,646,064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체
있다	0.8	1.1	0.5	0.3	5.5	4.9	-	10.7	-	-	-	1.1	-	-	3.1	1.4
없다	99.2	98.9	99.5	99.7	94.5	95.1	100.0	89.3	100.0	100.0	100.0	98.9	100.0	100.0	96.9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15), p.353

2) 지역사회 내 학대사건

지역사회 내 학대사건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염전지역 인권침해피해 장애인 발생원인 및 복지서비스지원 장벽에 관한 연구」(이동석, 2015)가 대표적이다. 사건의 학대피해 장애남성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대의 순환고리를 찾아내었다.

이를 통해 발생원인에 대응하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① 염전지역 유입 단계에서 직업소개소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②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언으로서 정기적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염전종사자 등록제 실시, 홍보 및 교육, 고충상담원 배치,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③ 사례 발생 후 지원체계에 관한 제언으로서 관할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설립, 자립지원 및 취업지원, 법률지원, 사례관리 및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④ 현지 정상화 방안을 정책으로 제언하였다.

3)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장애유형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여성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에서 성적 학대를 다루었다. 먼저 3명의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탐구한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문현주, 2014)는 성폭력 피해 경험 이슈를 총 7개의 범주로 추출하였다. 그 내용은 ‘장애정체성의 미확립’, ‘장애를 이용당함’, ‘상황을 예측하지 못함’, ‘내 인생이 사라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음’, ‘지지받지 못함’, ‘반복적인 위협에 노출됨’으로 나타났고, 친밀성에 의한 폭력에 비장애여성보다 더욱 취약한 결과가 드러났다. 또한,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적절한 상담, 보호, 개입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적장애여성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개입과 성폭력 예방교육과 데이트 기술 교육과 같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대처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었고, 지적장애여성이 이용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성폭력 민감성을 기를 수 있는 실천적 개입방법으로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강조되었다.

또한 사법상의 관련 판례의 경향을 진단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례 동향과 쟁점」(김정혜, 2010)과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혜, 2015)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에 정신적 장애인이 객체로 포함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형사 판결문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은 총 257건을, 질적 분석은 총 740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수가 증가하고, 적용 법조로서 장애인준강간죄 기소가 급감, 강간죄와 위계·위련에 의한 간음죄가 증가하였는데, 법 개정으로 인한 친고 요건 적용 배제,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좁은 해석 태도,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의 전반전 상향에서 오히려 무죄율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범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도 저항 능력에 달려있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저항 능력으로부터 역으로 추정되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중한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 가시적인 강제력만이 아니라, 친밀성의 이용,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 신뢰, 권력 관계의 이용,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보호망의 부재의 이용,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과 같은 가해자의 행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규제를 위하여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측면에서 성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법관의 경험칙이 성폭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재검토하여야 하고,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 적용 법조의 이원화 폐지, 비동의간음 영역의 범죄화 등을 제안하였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곤란’ 해석론에 대한 최은하(2015)의 연구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에서는 ‘항거곤란’이란 개념이 항거불능에 준하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폭

행·협박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성적 자기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과는 그 요건과 성질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인준강간죄를 독일형법 제177조의 성적 강요죄와의 비교하여, 행위수단으로서의 ‘무방비상태로 행위자의 영향에 방치된 상황의 악용’을 들어,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항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인식하여 성적 행위를 수인하게 되는 경우 등을 수용하여 장애인을 보다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의 학대경험을 범죄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DePoY(2001)의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학대사례도가 비장애여성의 학대사례와 유사하거나 정도가 더욱 심각하고, 비장애여성과 비교해 친밀한 상대에게 학대를 당한 여성은 부가적인 장애가 생길 가능성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독특한 형태의 학대를 겪는데, 장애여성 학대에 관한 개념 분석과 학대 감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보고를 지원할 수 있는 평가절차의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장애여성 학대평가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장애여성의 학대경험의 독특한 형태를 아울러 권력과 통제에 기반한 전통적 평가, 둘째, 자가보고와 자기평가를 통한 포괄적 기능평가, 셋째, 문화적 민감성, 보고 구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이질성에 대한 주목이다.

4) 시사점

상술한 일련의 연구가 시사하는 가장 큰 사항은 “장애”와 “여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정신적 장애유형과 관련하여 학대를 바라보는 인식은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관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테면,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자유의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 대한 학대보다 장애여성에게 학대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용한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먼저 형성한다면, 정신적 장애여성은 학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마저 떠안게 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는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장애여성 당사자가 함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보고하였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구체에 치우친 기존의 정책방향과 예방책으로서 성폭력 예방교육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하다. 특히나 성적 학대의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동기가 있는 가해자와 취약한 피해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부재가 범죄 발생의 세 축이 된다고 이해한다면, 그 중 정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호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법체계 내에서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여성 학대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뿐 아니라 진술조력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장애유형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III

서울시 장애여성의 학대 피해 실태 : 상담통계분석

1. 분석대상
2. 서울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학대유형별 학대 피해 실태
3. 서울시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피해 실태
4. 서울시 장애여성의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실태
5. 서울시 장애여성의 신체적 학대 피해 실태
6. 서울시 장애여성의 방임·유기 피해 실태
7. 서울시 장애여성의 심리적 학대 피해 실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장애여성의 학대 피해 실태 : 상담통계 분석

III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13년~2015년 상담사례 누적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의 대상이 되는 장애여성은 19세~60세로 연령의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0세~18세까지의 연령군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60세를 초과한 연령군에서 학대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3개 기관이 다루는 대부분의 사례가 19세~6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분석을 통해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실태의 전체적 지형이 도출된 후에는 장애유형을 지적·자폐성·정신장애로 한정하고, 학대유형을 신체적·성적 학대에 한정하여 보다 집중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장애유형을 지적·자폐성·정신장애로 한정된 근거는 선행연구에서 동 장애유형의 학대 관련 상담비율이 높았던 점, 학대 인지 및 학습과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동 장애유형이 대체로 유사한 생활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 등이다. 또한 학대유형을 신체적·성적 학대에 한정된 근거는 상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기 쉽고, 심리적 학대 및 재정적·물질적 학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상을 학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구별하여 시설거주 장애여성에 한정하지 않은 점은, 재가 장애여성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인구 과약이 현재로서 불가능하나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가정·시설·지역사회에까지 폭넓게 관찰하여 단순히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서울시 장애여성의 장애유형별·학대유형별 학대 피해 실태

2013년~2015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한 서울시 장애여성은 각각 22명, 67명, 103명으로 총 19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 1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합계
장애여성	22	67	103	192

장애유형으로는 지적 장애(134건, 69.8%)>지체장애(15건, 7.8%)>정신장애(13건, 6.8%)순이다.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여 정신적 장애여성의 상담사례는 총 14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77.1%로 나타났다.

표 Ⅲ- 2 장애인유형별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장애여성		
	빈도(건)	비율(%)	19세~60세 장애인등록현황 (2014.12.기준)
지체	15	7.8	27,052
시각	6	3.1	6,384
청각	6	3.1	5,084
언어	0	0	403
지적	134	69.8	6,787
뇌병변	11	5.7	4,429
자폐성	1	0.5	242
정신	13	6.8	6,070
신장	2	1.0	3,067
심장	0	0	200
호흡기	0	0	235
간	0	0	285
안면	0	0	142
장루·요루	0	0	257
간질	0	0	483
중복	2	1.0	-
모름	2	1.0	-
합계	192	100.0	61,120



특히 지적 장애여성의 경우 서울시 19세~60세 등록장애인 중 지적 장애여성인구가 6,787명에 불과한데, 통계자료를 제공한 3개 기관의 3년간 상담건수가 1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2015년 사이 서울시 19세~60세 지적 장애여성 100명 중 2명 꼴로 학대로 인한 상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신고나 상담 등의 보고를 거치지 않고 참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례를 고려하면 지적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학대유형으로 살펴보면, 장애여성의 경우 성적 학대와 재정적·물질적 학대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적 학대의 경우 총 113건으로 58.9%이며, 재정적·

물질적 학대는 총 33건으로 17.2%이다. 그 구체적 사례는 성적 학대의 경우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성적 착취이며,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구체적 사례는 횡령/배임, 사기, 명의도용, 강제노동, 임금체불이다.

【 표 III- 3 】 학대유형별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장애여성	
	빈도(건)	비율(%)
신체적 학대	22	11.5
성적 학대	113	58.9
심리적 학대	18	9.4
재정적·물질적 학대	33	17.2
방임·유기	6	3.1
합계	192	100.0

이를 정신적 장애여성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학대유형에 따른 대비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성적 학대의 비율은 장애유형을 한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8% 높고, 재정적·물질적 학대와 방임·유기의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지적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가 67.9%로 나타나 특정한 취약성이 드러난다.

【 표 III- 4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관련 상담사례: 학대유형

구분	장애여성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신체적 학대	8	6.0	1	100.0	1	7.7	10	6.8
성적 학대	91	67.9	0	0.0	7	53.8	98	66.2
심리적 학대	6	4.5	0	0.0	2	15.4	8	5.4
재정적·물질적 학대	23	17.2	0	0.0	3	23.1	26	17.6
방임·유기	6	4.5	0	0.0	0	0.0	6	4.1
합계	134	100.0	1	100.0	13	100.0	148	100.0

따라서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서울시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유기, 심리적 학대 순으로 중점을 두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서울시 장애여성의 성적 학대 피해 실태

1) 성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가 압도적(80.5%)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성적 학대 상담사례는 총 113건에 대하여 지적 장애(91건, 80.5%)>정신장애(7건, 6.2%)>뇌병변장애(6건,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 장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 장애유형에 성적 학대 발생 원인 파악과 대응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⁴⁾

Ⅲ 표 Ⅲ- 5 Ⅲ 장애유형별 성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빈도(건)	비율(%)
지체	1	0.9
시각	3	2.7
청각	3	2.7
언어	0	0.0
지적	91	80.5
뇌병변	6	5.3
자폐성	0	0.0
정신	7	6.2
신장	0	0.0
심장	0	0.0
호흡기	0	0.0
간	0	0.0
안면	0	0.0
장루·요루	0	0.0
간질	0	0.0
중복	2	1.8
합계	113	100.0

4) 이후 표에서는 빈도 0건인 유형 생략

성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40대, 10대 순이다. 이를 통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때 장애여성의 취약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연구 사전전문가회의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가보고의 가능성과 관련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20대에 처음으로 성적 학대에 노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수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30대 이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겪더라도 굳이 타인에게 알리지 않게 되어 통계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III- 6 성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름	합계
지체	0	0	0	0	1	0	0	0	1
시각	0	1	1	0	1	0	0	0	3
청각	1	1	1	0	0	0	0	0	3
지적	15	33	22	15	2	1	1	2	91
뇌병변	1	1	4	0	0	0	0	0	6
정신	0	1	2	3	1	0	0	0	7
중복	0	0	1	0	1	0	0	0	2
합계	17	37	31	18	6	1	1	2	113
비율	15.0	32.7	27.4	15.9	5.3	0.9	0.9	1.8	100.0

또, 장애여성의 장애정도에 있어서도 지적 장애의 경우 1급보다 2급이, 2급보다 3급이 더 많은 피해 상담이 있었던 것은 중증일수록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III- 7】 성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모름	합계
지체	0	0	0	0	0	1	0	1
시각	2	0	1	0	0	0	0	3
청각	0	3	0	0	0	0	0	3
지적	10	26	45	0	0	0	2	91
뇌병변	3	1	1	0	1	0	0	6
정신	0	2	2	0	0	0	2	7
중복	0	1	1	0	0	0	0	2
합계	15	33	50	0	1	1	4	113
비율	13.3	29.2	44.2	0.0	0.9	0.9	3.5	100.0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 여성의 주거환경은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98건 중 79건 8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다.

【표 III- 8】 정신적 장애여성 성적 학대 피해자 현거주지

구분	정신적 장애여성 현거주지							
	자택		거주시설		기타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지적	79	86.8	9	9.9	3	3.3	91	100.0
정신	7	100.0	0	0.0	0	0.0	7	100.0
합계	86	87.8	9	9.2	3	3.1	98	100.0

특히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 중 기초수급생활자인 경우로 확인된 사례가 35명이고, 그 중 31명이 지적 장애로 나타나 총 저소득층 지적 장애여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밀착 점검 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성적 학대의 가해자 : 지인 52.2%

모든 장애유형의 서울시 장애여성에 대하여 성적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은 ‘지인’ 으로 나타났다. 113건 중 59건으로 전체 52.2%를 차지하였으며, 뒤 이어 ‘모르는 사람’ 이 21건으로 18.6%, ‘가족 또는 친척’ 이 13건으로 11.5%가 해당되었다.

【 표 III- 9 】 성적 학대의 가해자

구분	가족 또는 친척	시설 관계자	타 장애인	공공 기관 관계자	지인	직장 관계자	모르는 사람	모름	합계
지체	0	0	0	0	1	0	0	0	1
시각	0	0	0	0	1	1	1	0	3
청각	0	0	0	0	2	1	0	0	3
지적	12	3	3	2	46	5	16	4	91
뇌병변	1	0	0	0	3	0	2	0	6
정신	0	0	0	0	4	1	2	0	7
중복	0	0	0	0	2	0	0	0	2
합계	13	3	3	2	59	8	21	4	113
비율	11.5	2.7	2.7	1.8	52.2	7.1	18.6	3.5	100.0

장애유형을 정신적 장애에 한정할 경우 자폐성 장애유형에서는 해당 상담사례가 없고, 지적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여성의 상담사례 98건 중 51.0%인 50건이 ‘지인’ 에 의한 성적 학대와 관련되었고, 이어 ‘모르는 사람’ 이 18건으로 18.4%, 가족 및 친척이 12건으로 12.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인’ 에 지역주민과 그 외 일정하게 만나거나 연락하였던 사람을 포함하였는데,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 가해자로서 지인은 지역주민인 경우가 31건으로 67.4%, 그 외가 15건으로 32.6%로 나타났다. ‘기타’ 로 분류된 지인으로 ‘채팅상대자’ 가 10건인 점도 특징적으로 보인다. 또, 가족 또는 친척의 경우는 정신적 장애여성 중 지적 장애에만 해당 상담사례가 있었고, 총 15건 중 ‘친척’ 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버지(2건)/어머니(2건)>형제자매 및 배우자(1건)의 순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는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정신적 장애여성의 주거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8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책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3) 성적 학대의 내용 : 친숙한 장소에서 발생

성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 범죄관련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도 성적 학대에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를 포함하였는데, 총 113건 중 81건이 ‘성폭행’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가 ‘성폭행’ 관련 상담 81건 중 68건을 차지하고, 성추행의 경우도 31건 중 29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성적 학대가 정신적 장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 대응 정책의 사후 구제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나, 그보다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이 강하게 도출된다.

【 표 III- 10 】 성적 학대의 내용: 장애유형별

구분	성적 학대 소분류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성적 착취		합계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지체	0	0.0	1	3.2	0	0.0	1	0.9
시각	2	2.5	1	3.2	0	0.0	3	2.7
청각	3	3.7	0	0.0	0	0.0	3	2.7
지적	62	76.5	28	90.3	1	100.0	91	80.5
뇌병변	6	7.4	0	0.0	0	0.0	6	5.3
정신	6	7.4	1	3.2	0	0.0	7	6.2
중복	2	2.5	0	0.0	0	0.0	2	1.8
합계	81	100.0	31	100.0	1	100.0	113	100.0

여기서 가해자 유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내용이 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 인 경우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또는 성적 착취의 범죄로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위하여 일부러 장애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경우 가해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한 장애여성의 동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또는 위계 및 위력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적 학대의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성적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이용시설’ (23.0%), ‘피해자의 집’ (23.0%), ‘가해자의 집’ (17.7%)이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이 죄질이 무거운 경우라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인’ 과 같은 경우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과 같이 고립된 곳에 쉽게 동반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III- 11 ■ 성적 학대의 발생장소

구분	성적 학대 발생장소											
	피해자의 집	거주 시설	가해자의 집	복지관	이용 시설	학교	직업 재활 시설	직장	병원	지역 내	모름	합계
지체	0	0	0	0	0	0	0	0	0	1	0	1
시각	1	0	0	0	0	0	0	1	0	1	0	3
청각	0	0	0	0	1	0	0	1	0	1	0	3
지적	20	2	17	1	21	4	1	2	1	13	9	91
뇌병변	4	0	0	0	0	0	0	0	0	1	1	6
정신	0	0	2	0	4	1	0	0	0	0	0	7
중복	1	0	1	0	0	0	0	0	0	0	0	2
합계	26	2	20	1	26	5	1	4	1	17	10	113
비율	23.0	1.8	17.7	0.9	23.0	4.4	0.9	3.5	0.9	15.0	8.8	100.0

학대지속기간은 일시적인 경우가 41건으로 36.3%이고, 6개월~1년 미만인 4건으로 3.5%, 1년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3.6%였다. 그런데 ‘기타’ 의 경우가 52.2%로 나타난 점은 성적 학대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할 수 없거나 횟수가 다수였던 경우

로, 특히 지적 장애여성과 정신장애여성의 59건 중 51건을 차지한다.

【표 Ⅲ- 12】 성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구분	성적 학대 지속기간 또는 횟수										합계
	일시 적	2개 월	3개 월	4개 월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기타	
지체	1	0	0	0	0	0	0	0	0	0	1
시각	2	0	0	0	0	0	0	0	0	1	3
청각	2	0	0	0	0	0	0	0	0	1	3
지적	32	2	2	1	4	1	1	1	1	46	91
뇌병변	2	0	0	0	0	0	0	0	0	4	6
정신	2	0	0	0	0	0	0	0	0	5	7
중복	0	0	0	0	0	0	0	0	0	2	2
합계	41	2	2	1	4	1	1	1	1	59	113
비율	36.3	1.8	1.8	0.9	3.5	0.9	0.9	0.9	0.9	52.2	100.0

4) 사후조치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113건 중 단 2건에 불과했다. 시설관계자가 43건으로 38.1%였고, 공공기관 관계자가 28건으로 24.8%, 지인이 21건으로 19.6%, 가족이 19건으로 16.8%의 순이었다. 특히 지적 장애여성의 경우 시설관계자의 상담신청 비율이 36.3%로 나타났고, 정신장애여성의 경우도 57.1%가 시설관계자가 상담을 신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관계자에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소 종사자,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를 포함하였는데, 이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기관으로서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신청이 3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81.4%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공공기관 관계자에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사회복지사, 경찰, 학교 종사자를 포함하였는데, 이 중 경찰이 16건으로 57.1%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간 성적 학대를 받은 장애여성이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업 체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 13 성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구분	성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본인	가족	시설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지인	합계
지체	0	0	0	1	0	1
시각	0	0	1	1	1	3
청각	0	1	1	0	1	3
지적	2	15	33	24	17	91
뇌병변	0	2	3	0	1	6
정신	0	1	4	1	1	7
중복	0	0	1	1	0	2
합계	2	19	43	28	21	113
비율	1.8	16.8	38.1	24.8	18.6	100.0

성적 학대의 경우 후속조치로서 대부분 조사, 신고 또는 소송, 법률자문이 이어진다. 그러나 상담 또는 상담관련 정보제공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에서 사례를 담당하지 않는 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3건 중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와 연계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였는데, 성적 학대에 의한 피해는 외상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정신적 장애여성의 경우 이로 인해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나, 비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사후조치로서 상담치료 지원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된다.

4. 서울시 장애여성의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실태

1)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 69.7%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재정적·물질적 학대 상담 사례 총 33건에 대하여 지적

장애(23건, 69.7%)>지체장애(5건, 15.2%)>정신(3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의 비율이 높아 이 장애유형에 재정적·물질적 학대 발생 원인 파악과 대응조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 표 III- 14 】 재정적·물질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빈도(건)	비율(%)
지체	5	15.2
시각	0	0.0
청각	1	3.0
언어	0	0.0
지적	23	69.7
뇌병변	1	3.0
자폐성	0	0.0
정신	3	9.1
신장	0	0.0
심장	0	0.0
호흡기	0	0.0
간	0	0.0
안면	0	0.0
장루·요루	0	0.0
간질	0	0.0
합계	33	100.0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대는 20대가 3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와 50대, 60대가 18.2%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 표 III- 15 】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름	합계
지체	0	1	0	0	3	1	5
청각	0	0	1	0	0	0	1
지적	10	1	5	5	1	1	23
뇌병변	0	0	0	0	1	0	1
정신	0	1	0	1	0	1	3
합계	10	3	6	6	5	3	33
비율	30.3	9.1	18.2	18.2	15.2	9.1	100.0

재정적·물질적 장애여성의 장애정도에 있어서 전체 33건 중 17건(51.5%)이 3급에 해당 하였으며, 지적 장애의 경우 1급보다 2급이, 2급보다 3급이 더 많은 피해 상담 이 있었다.

【 표 III- 16 】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모름	합계
지체	2	1	1	0	1	0	5
청각	0	0	1	0	0	0	1
지적	3	5	14	0	0	1	23
뇌병변	0	0	0	1	0	0	1
정신	0	2	1	0	0	0	3
합계	5	8	17	1	1	1	33
비율	15.2	24.2	51.5	3.0	3.0	3.0	100.0

재정적·물질적 학대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여성 23명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9명(8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7】 지체, 지적 장애여성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자 현거주지

구분	정신적 장애여성 현거주지					
	자택		거주시설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정신	1	33.3	2	66.7	3	100.0
지적	19	82.6	4	17.4	23	100.0
합계	20	76.9	6	23.1	26	100.0

2)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가해자 : 지인 42.4%, 가족 또는 친척 33.3%

재정적·물질적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은 ‘지인’ 으로 나타났다. 33건 중 14건으로 전체 42.4%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가족 또는 친척’ 이 11건으로 33.3%, ‘시설관계자’ 가 5건으로 15.2%에 해당하였다.

【표 III- 18】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가해자

구분	가족 또는 친척	시설 관계자	지인	직장 관계자	합계
지체	1	1	1	2	5
청각	1	0	0	0	1
지적	9	2	11	1	23
뇌병변	0	0	1	0	1
정신	0	2	1	0	3
합계	11	5	14	3	33
비율	33.3	15.2	42.4	9.1	100.0

3)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내용 : 횡령·배임이 다수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 범죄관련성이 매우 높다. 총 33건 중 11건이 ‘횡령·배임’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 장애의 경우가 ‘횡령·배임’ 관련 상담 11

건 중 8건을 차지하고, ‘명의로용’의 경우도 7건 중 7건 모두 지적장애에 집중되어 있다.

【 표 III- 19 】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내용

구분	재정적·물질적 학대 소분류															
	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저임금		강제 노동		명의로용		기타		합계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지체	2	33.3	1	9.1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5	15.2
청각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1	3.0
지적	3	50.0	8	72.7	3	100.0	0	0.0	2	50.0	7	100.0	0	0.0	23	69.7
뇌병변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0	0.0	1	3.0
정신	1	16.7	1	9.1	0	0.0	0	0.0	1	25.0	0	0.0	0	0.0	3	9.1
합계	6	100.0	11	100.0	3	100.0	1	100.0	4	100.0	7	100.0	1	100.0	33	100.0

재정적·물질적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17건, 21.5%)>거주시설(5건, 15.2%)=지역내(5건 15.2%)> 직장(3건, 9.1%)이다.

【 표 III- 20 】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발생장소

구분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발생장소							
	피해자의 집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직장	종교시설	지역 내	모름	합계
지체	2	1	0	2	0	0	0	5
청각	1	0	0	0	0	0	0	1
지적	12	2	1	1	1	5	1	23
뇌병변	1	0	0	0	0	0	0	1
정신	1	2	0	0	0	0	0	3
합계	17	5	1	3	1	5	1	33
비율	21.5	15.2	3.0	9.1	3.0	15.2	3.0	100.0

【 표 III- 21 】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구분	재정적·물질적 학대 지속기간 또는 횟수							합계
	1년 미만	1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상시	기타	
지체	0	2	1	0	0	0	2	5
청각	0	0	0	0	0	0	1	1
지적	7	3	2	2	0	1	8	23
뇌병변	0	0	0	0	1	0	0	1
정신	0	0	1	0	0	0	2	3
합계	7	5	4	2	1	1	13	33
비율	21.2	15.2	12.1	6.1	3.0	3.0	39.4	100.0

4) 사후조치

재정적·물질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33건 중 7건 이다. 가족이 8건으로 24.2%였고, 공공기관 관계자가 7건으로 21.2%, 본인이 7건으로 21.2%, 지인이 6건으로 18.2%, 시설관계자가 5건으로 15.2%의 순이었다.

【 표 III- 22 】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구분	재정적·물질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합계
	본인	가족	시설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지인	
지체	4	0	0	0	1	5
청각	0	0	0	0	1	1
지적	3	5	5	6	4	23
뇌병변	0	0	0	1	0	1
정신	0	3	0	0	0	3
합계	7	8	5	7	6	33
비율	21.2	24.2	15.2	21.2	18.2	100.0

5. 서울시 장애여성의 신체적 학대 피해 실태

1)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신체적 학대 상담 사례는 총 22건으로 지적장애(8건, 36.4%)>지체장애(4건, 18.2.2%)>시각장애(2건, 9.1%)=청각장애(2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II- 23 ■ 장애유형별 신체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빈도(건)	비율(%)
지체	4	18.2
시각	2	9.1
청각	2	9.1
언어	0	0.0
지적	8	36.4
뇌병변	1	4.5
자폐	1	4.5
정신	1	4.5
신장	1	4.5
심장	0	0.0
호흡기	0	0.0
간	0	0.0
안면	0	0.0
장루·요루	0	0.0
간질	0	0.0
모름	2	9.1
합계	22	100.0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40대가 가장 높다.

【표 III- 24】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름	합계
지체	1	0	0	0	2	1	4
시각	0	0	1	1	0	0	2
청각	0	0	1	1	0	0	2
지적	1	2	2	1	0	2	8
뇌병변	0	1	0	0	0	0	1
자폐	1	0	0	0	0	0	1
정신	0	0	1	0	0	0	1
신장	0	0	1	0	0	0	1
모름	0	0	0	0	1	1	2
합계	3	3	6	3	3	4	22
비율	13.6	13.6	27.3	13.6	13.6	18.2	100.0

신체적 학대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인 지적장애의 경우 1,2급 보다 3급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 25】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구분	1급	2급	3급	4급	모름	합계
지체	1	1	0	1	1	4
시각	2	0	0	0	0	2
청각	0	1	1	0	0	2
지적	2	2	4	0	0	8
뇌병변	0	0	1	0	0	1
자폐	0	1	0	0	0	1
정신	0	0	0	0	1	1
신장	1	0	0	0	0	1
모름	0	0	0	0	2	2
합계	6	5	6	1	4	22
비율	27.3	22.7	27.3	4.5	18.2	100.0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의 주거환경은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22건 중 7건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다.

【 표 III - 26 】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 현거주지

구분	신체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 현거주지							
	자택		거주시설		기타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지체	4	21.1	0	0.0	0	0.0	4	18.2
시각	2	10.5	0	0.0	0	0.0	2	9.1
청각	2	10.5	0	0.0	0	0.0	2	9.1
지적	7	36.8	1	50.0	0	0.0	8	36.4
뇌병변	1	5.3	0	0.0	0	0.0	1	4.5
자폐	0	0.0	1	50.0	0	0.0	1	4.5
정신	1	5.3	0	0.0	0	0.0	1	4.5
신장	1	5.3	0	0.0	0	0.0	1	4.5
모름	1	5.3	0	0.0	1	100.0	2	9.1
합계	19	100.0	2	100.0	1	100.0	22	100.0
		86.3		9.1		4.5		

2)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 : 가족 또는 친척이 다수(59.1%)

모든 장애유형의 서울시 장애여성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은 ‘가족 또는 친척’ 으로 나타났다. 22건 중 13건으로 전체 59.1%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지인’ 이 4건으로 18.2%로 나타났다.

【 표 III- 27 】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

구분	가족 또는 친척	시설 관계자	공공 기관 관계자	지인	직장 관계자	합계
지체	3	1	0	0	0	4
시각	1	0	0	1	0	2
청각	1	0	0	1	0	2
지적	3	1	1	2	1	8
뇌병변	1	0	0	0	0	1
자폐	0	1	0	0	0	1
정신	1	0	0	0	0	1
신장	1	0	0	0	0	1
모름	2	0	0	0	0	2
합계	13	3	1	4	1	22
비율	59.1	13.6	4.5	18.2	4.5	100.0

3) 신체적 학대의 내용 : 폭행이 다수(90.9%)

신체적 학대는 세부적으로 폭행, 모욕,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 학대로 분류하였는데 총 22건 중 20건이 ‘폭행’ 으로 나타났다. 지적 장애의 경우가 ‘폭행’ 관련 상담 20건 중 7건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지체 장애의 경우가 3건으로 나타났다.

【 표 III- 28 】 장애유형별 신체적 학대의 내용

구분	신체적 학대 소분류							
	폭행		모욕,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		학대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지체	3	15.0	0	0.0	1	100.0	4	18.2
시각	2	10.0	0	0.0	0	0.0	2	9.1
청각	2	10.0	0	0.0	0	0.0	2	9.1
지적	7	35.0	1	100.0	0	0.0	8	36.4
뇌병변	1	5.0	0	0.0	0	0.0	1	4.5
자폐	1	5.0	0	0.0	0	0.0	1	4.5

구분	신체적 학대 소분류							
	폭행		모욕,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		학대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정신	1	5.0	0	0.0	0	0.0	1	4.5
신장	1	5.0	0	0.0	0	0.0	1	4.5
모름	2	5.0	0	0.0	0	0.0	2	9.1
합계	20	100.0	1	100.0	1	100.0	22	100.0
		90.9		4.5		4.5		

신체적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68.2%)> ‘거주시설’ (18.2%)> ‘학교’ (4.5%)= ‘직업재활시설(4.5%)= ‘지역 내(4.5%)’ 의 순이다. 여타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거주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 표 III - 29 】 신체적 학대의 발생장소

구분	신체적 학대 발생장소					
	피해자의 집	거주시설	학교	직업재활시설	지역 내	합계
지체	3	1	0	0	0	4
시각	2	0	0	0	0	2
청각	2	0	0	0	0	2
지적	3	2	1	1	1	8
뇌병변	1	0	0	0	0	1
자폐	0	1	0	0	0	1
정신	1	0	0	0	0	1
신장	1	0	0	0	0	1
모름	2	0	0	0	0	2
합계	15	4	1	1	1	22
비율	68.2	18.2	4.5	4.5	4.5	100.0

신체적 학대의 기간은 기타가 다수(63.6%)를 차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 30 】 신체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구분	신체적 학대 지속기간 또는 횟수								
	일시적	3개월	1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30년 이상 40년 미만	상시	기타	합계
지체	0	0	0	0	0	1	0	3	4
시각	0	0	0	1	0	0	0	1	2
청각	0	1	0	0	0	0	0	1	2
지적	1	0	0	0	0	0	1	6	8
뇌병변	0	0	1	0	0	0	0	0	1
자폐	0	0	0	0	0	0	1	0	1
정신	0	0	0	0	1	0	0	0	1
신장	0	0	0	0	0	0	0	1	1
모름	0	0	0	0	0	0	0	2	2
합계	1	1	1	1	1	1	2	14	22
비율	4.5	4.5	4.5	4.5	4.5	4.5	9.1	63.6	100.0



4) 사후조치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뒤 상담신청자는 공공기관 관계자가 8건으로 36.4%, 본인이 6건으로 27.3%, 시설관계자가 5건으로 22.7%, 지인 3건 13.6%의 순이었다. 시설관계자에는 복지관, 복지지설종사자, 상담소, 민간, 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였는데, 이 중 복지관 복지지설 종사자가 3건(60.0%)이다. 공공기관 관계자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공공기관 종사자 5건(62.5%), 공무원 3건(37.5%)이다. 신체적 학대의 상담 신청자 지인에는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2건(66.7%), 기타 1건(33.3%)이다.

【 표 Ⅲ- 31 】 신체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구분	신체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본인	시설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지인	합계
지체	1	1	2	0	4
시각	0	2	0	0	2
청각	0	0	1	1	2
지적	3	1	3	1	8
뇌병변	0	0	1	0	1
자폐	0	0	1	0	1
정신	1	0	0	0	1
신장	1	0	0	0	1
모름	0	1	0	1	2
합계	6	5	8	3	22
비율	27.3	22.7	36.4	13.6	100.0

6. 서울시 장애여성의 방임·유기 피해 실태

1) 방임·유기 학대의 피해자 : 지적장애에만 발생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방임·유기 피해 상담 사례는 총 6건으로 지적장애유형만 나타났다.

【 표 Ⅲ- 32 】 방임·유기 관련 상담사례: 장애유형별

구분	빈도(건)	비율(%)
지적	6	100.0
합계	6	100.0

방임·유기의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동일하게 높으며 다음으로 50대 60대 순이다.

표 Ⅲ- 33 방임·유기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구분	20대	30대	50대	60대	합계
지적	2	2	1	1	6
합계	2	2	1	1	6
비율	33.3	33.3	16.7	16.7	100.0

재정적·물질적, 신체적 장애의 경우 1급, 2급보다 3급에서 더 많은 피해 상담이 이루어진 것은 중증일수록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방임·유기의 경우 3급보다는 1급에서 더 많은 피해 상담이 있었던 것은 중증일수록 거주환경 내에서 피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표 Ⅲ- 34 방임·유기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구분	1급	2급	모름	합계
지적	4	1	1	6
비율	66.7	16.7	16.7	100.0

방임·유기 학대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 여성 6명 중 4명은 거주시설에, 2명은 자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 35 방임·유기 장애여성 현거주지

구분	장애여성 현거주지					
	자택		거주시설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지적	2	33.3	4	66.7	6	100.0

2) 방임·유기 학대의 가해자 : 시설관계자가 다수

방임·유기 학대가해자로 가장 높은 비율은 ‘시설관계자’로 나타났다. 6건 중 4건으로 전체 66.7%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가족 또는 친척’이 1건으로 16.7%에 해당되었다.

■ 표 III- 36 ■ 방임·유기의 가해자

구분	가족 또는 친척	시설관계자	지인	합계
지적	1	4	1	6
비율	16.7	66.7	16.7	100.0

3) 방임·유기의 내용 : 교육서비스 결여

방임·유기 학대에 식사 등 영양공급 불충분, 난방, 청결 등 생활환경 부적절 또는 교육서비스 결여가 포함되는데, 총 6건 중 4건이 ‘교육서비스 결여’ 피해로 나타났다.

■ 표 III- 37 ■ 방임·유기의 내용: 장애유형별

구분	방임·유기 소분류							
	식사 등 영양공급 불충분		난방, 청결 등 생활환경 부적절		교육서비스 결여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적	1	16.7	1	16.7	4	66.7	6	100.0

방임·유기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주로 거주시설(66.7%)이며 다음으로 피해자의 집(33.3%)이다.

【 표 III- 38 】 방임·유기의 발생장소

구분	방임·유기 발생장소		
	피해자의 집	거주시설	합계
지적	2	4	6
비율	33.3	66.7	100.0

방임·유기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이 2건으로 33.3%, 4년 이상이 1건으로 16.7% 5년 이상이 1건으로 16.7%였다. ‘기타’의 경우가 33.3%로 학대의 기간을 알 수 없거나 수년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 39 】 방임·유기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구분	방임·유기 지속기간 또는 횟수				
	1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기타	합계
지적	2	1	1	2	6
합계	33.3	16.7	16.7	33.3	100.0

III

4) 사후조치

방임·유기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여성의 경우 본인이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공공기관 관계자가 5건, 지인 1건의 순이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5건 모두 공무원이었다.

【 표 III- 40 】 방임·유기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구분	방임·유기 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공공기관 관계자	지인	합계
지적	5	1	6
비율	83.3	16.7	100.0

7. 서울시 장애여성의 심리적 학대 피해 실태

1) 심리적 학대의 피해자 : 지적 장애, 30대 연령이 다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여성 심리적 학대 상담 사례는 총18건에 대하여 지적장애(6건, 33.3%)>지체장애(5건,27.8%)>정신장애(3건,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 41 장애유형별 심리적 학대 관련 상담사례

구분	빈도(건)	비율(%)
지체	5	27.8
시각	1	5.6
청각	0	0.0
언어	0	0.0
지적	6	33.3
뇌병변	3	16.7
자폐성	0	0.0
정신	2	11.1
신장	1	5.6
심장	0	0.0
호흡기	0	0.0
간	0	0.0
안면	0	0.0
장루·요루	0	0.0
간질	0	0.0
합계	18	100.0

심리적 학대의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대는 전체 18명중 30대가 50.0%로 가장 높으며, 20대, 40대, 60대가 동일하게 11.1%이다.

【 표 III - 42 】 심리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름	합계
지체	0	2	0	1	0	1	1	5
시각	0	1	0	0	0	0	0	1
지적	2	2	2	0	0	0	0	6
뇌병변	0	2	0	0	1	0	0	3
정신	0	1	0	0	1	0	0	2
신장	0	1	0	0	0	0	0	1
합계	2	9	2	1	2	1	1	18
비율	11.1	50.0	11.1	5.6	11.1	5.6	5.6	100.0

III

심리적 학대의 피해 장애여성의 주거환경은 자택이 14건으로 77.8%, 기타 16.7%의 순이었다.

【 표 III - 43 】 심리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 현거주지

구분	장애여성 현거주지							
	자택		거주시설		기타		합계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지체	5	35.7	0	0.0	0	0.0	5	27.8
시각	1	7.1	0	0.0	0	0.0	1	5.6
지적	5	35.7	1	100.0	0	0.0	6	33.3
뇌병변	2	14.3	0	0.0	1	33.3	3	16.7
정신	1	7.1	0	0.0	1	33.3	2	11.1
신장	0	0.0	0	0.0	1	33.3	1	5.6
합계	14	100.0	1	100.0	3	100.0	18	100.0
		77.8		5.6		16.7		

심리적 학대의 피해상담은 지적장애 6건, 지체장애 5건의 순이며,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1급보다는 2급이, 2급보다는 3급이 더 많은 피해 상담이 이루어 졌다.

【표 Ⅲ- 44】 심리적 학대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정도

구분	1급	2급	3급	4급	모름	합계
지체	1	0	1	1	2	5
시각	1	0	0	0	0	1
지적	0	2	4	0	0	6
뇌병변	1	2	0	0	0	3
정신	0	1	0	0	1	2
신장	0	1	0	0	0	1
합계	3	6	5	1	3	18
비율	16.7	33.3	27.8	5.6	16.7	100.0

2) 심리적 학대의 가해자 : 가족 또는 친척

심리적 학대 가해자로는 가족 또는 친척이 6건(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지인과 직장관계자가 각 3건으로 나타났다.

【표 Ⅲ- 45】 심리적 학대의 가해자

구분	가족 또는 친척	시설 관계자	타 장애인	공공 기관 관계자	지인	직장 관계자	모름	합계
지체	0	0	1	1	1	2	0	5
시각	0	0	0	0	0	0	1	1
지적	4	0	0	0	2	0	0	6
뇌병변	0	1	0	0	0	1	1	3
정신	1	0	0	1	0	0	0	2
신장	1	0	0	0	0	0	0	1
합계	6	1	1	2	3	3	2	18
비율	33.3	5.6	5.6	11.1	16.7	16.7	11.1	100.0

3) 심리적 학대의 내용 :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심리적 학대의 내용에는 모욕,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 따돌림, 무시, 협박, 강요, 자기결정권 침해가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모욕,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이 7건으로 38.9%, 자기 결정권 침해가 6건으로 33.3%, 따돌림, 무시가 4건으로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 46】 심리적 학대의 내용: 장애유형별

구분	심리적 학대 소분류									
	모욕, 비하발언 등의 언어폭력		따돌림, 무시		협박, 강요		자기결정권 침해		합계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 (건)	비율 (%)	빈도(건)	비율%
지체	3	42.9	2	50.0	0	0.0	0	0.0	5	27.8
시각	1	14.3	0	0.0	0	0.0	0	0.0	1	5.6
지적	2	28.6	0	0.0	1	100.0	3	50.0	6	33.3
뇌병변	0	0.0	1	25.0	0	0.0	2	33.3	3	16.7
정신	0	0.0	1	25.0	0	0.0	1	16.7	2	11.1
신장	1	14.3	0	0.0	0	0.0	0	0.0	1	5.6
합계	7	100.0	4	100.0	1	100.0	6	100.0	18	100.0
		38.9		22.2		5.6		33.3		

심리적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다른 학대 유형보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집이 5건(27.8%), 직장이 3건(16.7), 거주시설이 2건(11.1%), 이용시설도 2건(11.1%), 복지관, 학교, 종교시설 병원이 각 1건(5.6%)이다.



【표 III- 47】 심리적 학대의 발생장소

구분	심리적 학대 발생장소									
	피해자의 집	거주 시설	복지관	이용 시설	학교	직장 (회사)	종교 시설	병원	모름	합계
지체	0	1	1	1	0	2	0	0	0	5
시각	0	0	0	0	0	0	0	0	1	1
지적	4	0	0	1	0	0	1	0	0	6
뇌병변	0	1	0	0	0	1	0	0	1	3
정신	0	0	0	0	1	0	0	1	0	2
신장	1	0	0	0	0	0	0	0	0	1
합계	5	2	1	2	1	3	1	1	2	18
비율	27.8	11.1	5.6	11.1	5.6	16.7	5.6	5.6	11.1	100.0

심리적 학대의 지속기간은 일시적이 3건으로 16.7%,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상시가 각 1건으로 5.6%였다. 기타의 경우가 전체 18건 중 12건(66.7%)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1건으로 91.7%이다.

【표 III- 48】 심리적 학대의 지속기간 또는 횟수

구분	심리적 학대 지속기간 또는 횟수					합계
	일시적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상시	기타	
지체	3	0	0	0	2	4
시각	0	0	0	0	1	2
지적	0	1	1	1	3	2
뇌병변	0	0	0	0	3	8
정신	0	0	0	0	2	1
신장	0	0	0	0	1	1
합계	3	1	1	1	12	18
비율	16.7	5.6	5.6	5.6	66.7	100.

4) 사후조치 : 본인이 상담 신청(55.6%)

심리적 학대 피해를 입은 상담신청사례는 다른 학대 유형보다 본인이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55.6%로 높게 나타났다. 지인이 4건으로 22.2%, 가족이 2건으로 11.1%, 시설관계자도 2건으로 11.1%의 순이었다. 심리적 학대의 가족 상담신청자는 아버지 2건, 배우자 1건이다. 상담신청자중 지인에는 지역주민이 2건, 종교관계자 1건, 기타도 1건이 포함되었다.

표 Ⅲ- 49 Ⅲ 심리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구분	심리적 학대의 상담신청자 대분류				
	본인	가족	시설관계자	지인	합계
지체	4	0	1	0	5
시각	1	0	0	0	1
지적	1	1	1	3	6
뇌병변	3	0	0	0	3
정신	0	1	0	1	2
신장	1	0	0	0	1
합계	10	2	2	4	18
비율	55.6	11.1	11.1	22.2	100.0

8. 시사점

이상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13년~2015년 상담사례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시 장애여성의 학대실태를 살펴보았다. 정신적 여성장애인의 학대피해가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서울시 정신적 여성장애인 학대피해 실태라고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여성이 학대피해를 당한 경우 위 3개 기관에 상담 신청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바로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한 경우 통계에서 누락될 확률이 높다. 또한 3기관의

통계양식이 모두 다르다 보니 많은 정보가 소실될 가능성도 높았다.

또한 현재 장애여성 학대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4)에서 가족 내 폭력과 성희롱, 성학대 등이 포괄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착취, 폭력 유형별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여성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동,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이 처한 다양한 학대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대를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고, 개별 민간 인권옹호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정한 상담유형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통합적인 실태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실태를 살펴봐왔다는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서울시의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장애인 학대실태를 조사하면서, 성별, 장애유형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실태, 원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IV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체계의 문제 : FGI 결과분석

1.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관련자 면접 개요
2. 면접분석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체계의 문제 : FGI 결과분석

1.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방지 관련자 면접 개요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피해방지 현황 및 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면접에는 총 12명이 참여하였으며,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회로 나누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는 10월 17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자 1부터 참여자 5까지 참여하였으며, 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2차 인터뷰는 10월 19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자 6부터 참여자 12까지 참여하였으며, 주로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각 면접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공무원 4명, 장애인인권센터 2명,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명, 장애인거주시설 2명, 정신장애인요양시설 1명, 가족폭력피해여성쉼터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참여자는 9명이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경력은 관련 업무를 맡은지 4개월이 된 참여자부터 35년 경력이 있는 참여자까지 관련 경력은 다양하였다. 연령대는 30대 3명, 40대 4명, 50대 4명, 60대 1명의 분포를 보였다. 참여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8명, 남성 4명이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소속 기관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대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

IV

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유 현황, 관련 분야 경력 정도, 연령대, 성별을 기술하였다.

■ 표 IV- 1 ■ FGI 참여자의 일반적특성

참여자	소속 기관 구분	소유 자격증	경력	연령대	성별
1	장애인인권센터	-	3년	30대	남성
2	공무원	사회복지사1급	4개월	50대	남성
3	공무원	-	8년	50대	남성
4	공무원	사회복지사1급, 건강가정사,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	7년	50대	여성
5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사회복지사1급, 가정성폭력상담원, 직업상담사,	35년	60대	여성
6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5년	40대	여성
7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	13년 6개월	30대	여성
8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	4년 10개월	40대	남성
9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사,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7년	30대	여성
10	장애인인권센터	사회복지사	15년	40대	여성
11	공무원	사회복지사	22년	40대	여성
12	정신요양원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13년 3개월	50대	여성

면접은 참여자를 직업 대면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면접 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참여자들에게 보내주었고, 면접 당일에는 연구의 필요성, 면접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이후 경험한 학대피해의 현황,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경험 및 문제점, 학대예방체계의 문제점, 학대의 원인, 정책적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하였다. 특히 학대피해와 학대원인과 관련해

서는 정신적 장애여성의 특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폭력, 즉 젠더 폭력의 관점에서 면접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 범주별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하였다. 또한 한 참여자의 발언이 끝나면 바로 참여자간에 토론이 이루어졌다. 면접 후 전사방식으로 녹취록이 작성되었다. 이 녹취록은 이후 연구원들이 분석하는데 이용되었다.

2. 면접분석결과

연구원들이 녹취록을 수차례에 걸쳐 읽어보면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은 학대 실태, 학대의 원인, 예방 및 신고체계의 문제, 지원체계의 문제, 제언으로 범주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는 다섯 가지 범주에 따라 정리하였다.

1) 학대 실태

학대 발생 장소: 가정과 시설 내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는 주로 가정과 시설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정신적 장애여성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학대실태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시설 및 가정에서의 학대 비율이 높고,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학대 피해가 심했는데(이동석 외, 2014),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갖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등에서의 차별 또는 학대 보다는 가정 및 시설에서의 학대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 및 시설 내가 많다고 해서 다른 곳, 즉 지역사회에서의 학대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여성이 시설 및

가정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피해방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여성이 시설 및 가정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장애인인권센터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학대피해만 보면 학대는 가정과 시설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 시설 외에는 직장에서 일부 있기는 한 데 극소수고요, 대부분 가정에서 시설에서.” (참여자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계적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위계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배우자 등 가해자는 다양했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상하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시설에서는 이용자에게 지시하고 행동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계관계가 명확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위계관계이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학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화되고, 더욱 강화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봤는데 대부분 가족이었고,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배우자 사실혼도 있고 동거인 관계도 있는데 아무튼 상하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형제관계, 배우자 관계나 시설에서나 상하관계가 명백하게 성립되고 이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이 사람의 행동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참여자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억압

남성 장애인의 경우 그나마 보호자가 사회진출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학대상황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 등에서 배제되고 집에만 가둬지다보니 보호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통

제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제가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학대가 되고, 작은 학대에 대해 당사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학대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결국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억압을 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일 경우 지역사회 등 외부에서도 피해자의 학대 상황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주변에서는 학대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학대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특히 여성 장애인이면 이웃이나 친척도 다 용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키우는 게 힘들고, 양육 하는 게 힘들고, 같이 생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대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우월하고 가치 있다는 인식은, 장애인, 여성,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대우나 학대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열악한 대우나 학대가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보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열등한 존재로, 남성의 부속품 정도로 보는 대중의 인식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대 피해자들은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에 억눌려 있었고 이것이 굉장히 장기간 되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자면 남성은 그래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중도 장애를 입었을 경우 가정에서는 장애를 재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직업을 통해서나 그 비율도 적기는 하지만 남성은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사회생활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성인이 된 이후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에 여성에게 이런 지원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여성이고 장애가 있을 경우 집에 가둬놓거나 집에만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제를 시키거나 통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는 처음에는 약하게 발생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폭력을 예로 들면 처음엔 언어폭력으로 시작해요. 막말하거나 장애를 비하하거나 그다음에 체벌을 하다가 폭력을 한번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상습폭행까지 가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장기간 지속되고 경미한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여자 1)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이유가 이웃이나 다른 친척들이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장애인이면 가정폭력이면 이웃이나 친척도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임이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키우는게 힘들고 양육 하는게 힘들고 같이 생활하는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용서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서 묵인했다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다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여자 1)

복합적 학대

학대는 그 행태에 따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방임·유기, 차별적 학대, 제도적 학대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동석 외, 2014). 기존의 문헌을 보면 학대유형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피해장애인이 한 가지 유형의 학대피해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면접결과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의 경우 한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제적 착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학대유형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복합적 지원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애여성들이 성적만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참여자 7)

“그래서 이중적 억압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장애여성들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문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는 장애문제고 어떤 문제는 여성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문제가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여성에게 폭력피해 특성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성폭력 상담을 해보면 성폭력 문제로 들어오지만 얘기를 해보면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폭력의 내용이 젠더문제 뿐만 아니라 유기나 방임, 실제로는 신체적 학대, 그로 인한 성적 학대까지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참여자 6)

“만약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특별히 나타나는 게, 친족 성폭력, 그러니까 아버지나 비장애 형제들한테 성적 학대나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생애주기별로 봤

을 때 학령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성인이 되었을때는 졸업하고 갈곳이 없으니
까. 주로 집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는 방입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학대도 되고 그리고 막,
장애가 경증이면 채팅을 했을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적행위가 이루어지면 부모가
하는 방식은 통제와 감금 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가지는 학대행위.” (참여자 6)

2) 학대의 원인

영원한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 자기결정 경험의 부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비슷비슷한 교육 내용을 배우다 보니,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학대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용시설에서도 자립생활, 지역사회지원 등등의 이름으로 갖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관 내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할 뿐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이불개기, 청소하기, 설거지 등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었고,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기결정이나 선택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시기가 왔을 때 아무 것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오히려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원히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을 받고 자기결정이 부족하다보니,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의사소통과 신고에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순종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소는 학대를 점점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대피해자는 학대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학대에 잘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학대피해자들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

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 정신적 장애여성들은 정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함에 따라 성관계에서의 동의,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성행위, 성적 학대를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어를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순종적인 문화에서 정신적 장애인들은 지시 내용을 잘 따르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피해 여성장애인들은 학대가해자의 요구나 요청에 쉽게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 학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학대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 으로 귀인시켜서는 안된다. 개인과 관련된 요소마저도 이 사회가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부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까지 교육내용도 비슷하고 커리큘럼 짜 놓은 것도 비슷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어떤 것이 없고... (중략) 아주 방임하거나 아주 과보호, 과잉보호하거나... (중략) ...자립생활, 지역우대지원, 정서지원. 그것은 다 어디 안 나갔을 때 문 밖에 안 나갔을 때 보호되는 상황이지, 왜냐하면 보면 이불하나 못하고 청소하나 설거지하나 제대로 못하고 걸레하나 제대로 못 짜고... 반찬도 못한다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고 둘인데도 이렇게 때문에 실제로 달걀 후라이, 밥, 국도 끓일 줄 몰랐고, 밥은 전기밥솥이 있지만 너무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키워지고 있고나. (중략)... 지금 교육도 커리큘럼을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본 것은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것이고, 언제까지나 꽃 속에 살아 늙지 않는 것처럼 변동이 없습니다.” (참여자 5)

“자기 결정이나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시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저는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 때문에 결정력이 없다고 생각 하기 보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결정이나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장애특성상 강화되는 면이 있는데 특히나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결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험을 가지지 않을까.” (참여자 6)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가족, 시설 내에서 가족, 종사자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

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대가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대피해자와 학대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불평등한 힘의 구조이다. 일방에게 편중된 불평등한 힘은, 특히 보호자에게 축적된 힘은 약자에 대한 학대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학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학대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의 불균형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이동석 외, 2014). 서울시 장애여성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위계적 관계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마음에 중심에서 서비스 대상이 동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느냐인데 사실 종사자들이나 장애 가족이 그 생각을 못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 내가 너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권침해는 바로 나타나요.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리면 그게 학대의 원인이거든요. ... 그게 안 버려진 직원한테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가족한테도 나타나요. 여성 장애인이 성적인 추파를 던진다 하더라도 내가 만만하니까 쉽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재가 만만하니까 내가 성적인 노리개로 삼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안 가져야 하는데 쉽게 가진다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모든 인권이 발생하는 거죠.” (참여자 7)

복합위기 가정 : 부모 자녀 모두 정신적 장애

지역사회에 있는 학대피해자 중 부모도 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딸이 친인척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바람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친인척 등이 부모에게 협박을 하면 부모들이 두려움에 자녀가 당한 성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딸은 스스로도 학대에 대응할 수 없고, 보호자인 부모도 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족이 피난처로서 의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변에 지원망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또

한 가해자와 자주 만나다보면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도 학대가해자에게 의존하고 동화될 수밖에 없다(이동석 외, 2015). 이처럼 학대피해 정신적 장애여성들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주변에 지원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망 개선과 더불어 복합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부모도 장애인, 지적장애인 여기서 엄마는 정신장애인, 한 쪽은 정신장애인,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도 정신장애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확인해보니 지적이 2급 정도가 나왔는데.. (중략) ... 누군가가 협박을 하면 가족들이 협박을 하면 안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저한테는 외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참여자 4)

활동보조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부족

지원체계의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보니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에서도 탈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대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복합위기 가정이고, 1:1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걸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조지원에서 탈락하게 됨에 따라 학대가해자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오히려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웃과 어울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 또는 무관심을 견뎌야 한다. 결국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학대는 쉽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어서 보는 거는 멀쩡해 보여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데 3급이기 때문에 걸어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조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엄마는 정신장애 지

적장애여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 분이 병원에서 나오면 일상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거기서 2급 장애인이 나와서 엄마랑 같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활동보조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걸어 다닌다고 밥 혼자 먹고 활동보조인이 안될 가능성이 크더라는 얘기를 듣고.” (참여자 4)

자기방어능력 부족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본인이 학대를 당했음에도 이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현재도 긴급전화 등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정신적 장애여성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 행위는 학대이고 해서는 안 될 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대에 더욱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기방어기술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 기술은 평생을 통해 발전하며 학습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된다. 자기방어기술은 개인이 성적 행동과 같은 행동에 동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 때 동의는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방어기술은 고정된 능력도 아니고 개인이 타고난 것도 아니며, 사회적 과정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방어기술은 개인에 속하지만 사회적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또한 자기방어기술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은 가정환경과 같은 미시체계 내에 위치하게 된다. 이 환경은 가족 구성원이나 유급의 서비스 제공자, 거주시설 내의 동료 거주인 등과 같은 밀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고립이나 과보호는 성폭력 등과 같은 학대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개인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가 위기에 빠졌다고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하고 틀려서 자기 표현력도 부족하고 함부로 상담원이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이라고 확인이 되면 나를 상담원의 기질을 발휘해서 물어보고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를 긴급구조도 하고 할텐데 그 자체도 조심스럽고 어렵고 하니까 긴급전화가 있지만 장애여성들이 sos 구제요청을 하기에는 어려

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외로 성폭력 피해대상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어요. 성폭력 피해대상의 76%가 지적장애인이예요.” (참여자 3)

“가족에서 일어난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진술하기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사판단이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의 특성이 본인이 피해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 나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행위가 피해 상황,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면 대부분 가해자의 행동들이 나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기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참여자 1)

역압의 내재화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 학대와 같은 역압을 자신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고 힘들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등 역압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저항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3급 정도는 제가 맞고 힘들어도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힘들어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멍이 있으면 명절에도 안 가는 거예요. 명절에 교류를 하는 친정 식구들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부모 시어머니가 때린다는 것을 어디 가서 말 하지마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당한 거예요.” (참여자 7)

가족 내 일상적 역할에 대한 혼란

정신적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 양육방법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해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이처럼 취급하여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 즉 가사활동, 양육활동 등에 대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무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시댁 또는 외부

사람이 통제하려 할 수 있고,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온갖 학대를 자행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앞서 본 대로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학대는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일반 교육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여성이 모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결혼을 유지하거나 양육을 해야하고, 여성차별적이지만 여성에게 강요되는 역할들을 수행되지 못했을 때 오는 학대부분, 시댁식구들이나 친정식구들이 막 이렇게 하는... 자녀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문제이고...” (참여자 6)

3) 예방 및 신고체계의 문제

예방 정책의 부재

서울시의 경우 성폭력 상담소 등 사후 대책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신호를 적절히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보니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조차도 어디까지를 학대 및 방임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예방 정책으로서 개인적인 단계에서 교육과 신고 절차 안내와 같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서비스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전과 조회와 직원 교육 전략, 정부 및 지역사회 단계에서 입법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대예방 매뉴얼 등과 같은 예방관련 자료들의 개발을 통해 현장 실무자, 관련 공무원, 장애인, 일반 시민 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같은 경우 사후에 발생이 되었을 때 체계는 좀 견고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성폭력이라고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성폭력 상담소가 4군데가 있고 해바라기 센터가 5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처리되는 프로세스는 좀 풍성하게 있는데 예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예방교육으로써는 교육내용이나 관점이나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6)

예방교육 등에서 여성과 장애의 통합 부재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현재 예방강사들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예방강사가 추가적으로 장애 개념, 장애인 지원에 대한 철학 등에 대해 교육을 받던가, 장애 전문가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성폭력예방강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친 성폭력예방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예방교육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 또는 복합적 억압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또는 여성 중 한 측면만 강조해서는 복합적 억압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예방강사 과정을 새로 만들고, 교육도 장애와 성폭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보았을 때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전문 인력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여가부가 전문 강사를 위촉했을 때 위촉강사가 하거나 별도의 기관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예방 강사들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는 넓은 분들이 많으나 장애를 이해하기 떨어져서 시설에서 항상 불만은 강사가 장애를 이해를 못해서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그 사람들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적인 사례가 많아요.” (참여자 6)

정신적 여성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예방교육 내용

정신적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장애 유형에 맞는 성폭력 예방 교육교재 및 강의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다 보니, 정

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경우 대부분 아동용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성인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부적합한 내용을 교육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인 장애여성의 경우 안전하고 즐거운 성행위, 자기결정에 의한 성행위 등 성인 여성이 교육받아야 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교육받되 교육방법이 장애특성에 맞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교육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이지 교육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 내용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아동, 지적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교육내용이 전부다 아동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인 지적발달장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 (참여자 6)

당사자 인권교육의 효과성 부족

거주시설 등에서 당사자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중증 정신적 장애인과 경증 정신적 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다보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적능력과 사회성 등과 같은 것이다. 결국 중증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될 수 있다. 따라서 중증 지적장애인과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도구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경증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하다보면 중증장애인의 교육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증이나 경증이나 섞여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시설에서는 밝혀지기가 어렵고 밝혀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분리되고 조치가 따르지 않다보니까 진술이 오염이 돼서 나중에는 무혐의처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참여자 1)

가족문화에 따른 신고의 어려움

타 가정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에 따라, 옆집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의 경우 남성장애인의 경우보다는 여성장애인, 이 중에서도 정신적 여성장애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외부에서 단순한 가족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학대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집안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문화적인 것을 자기주장 못하는 것, 남의 가정사가 이런 문화적인 것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 가족폭력도 엄청 많이 홍보하고 경찰이 가보고 그래도 아직 신고 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게 많아요.” (참여자 12)

“시설이나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사후 조치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굵고 굵아서 경찰 신고까지 들어와야 이쪽에 연결되는 거죠.” (참여자 7)

종사자들의 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 왕따 등 신변의 안전 위협

이용시설,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고를 했다가 주변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직원의 일이 되다보니 귀찮기도 하고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여 문제제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학대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학대 방지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장애인 지원절차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변인 교육 하는데 과연 시설 안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신고의 의무를 다하는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은 암묵적 왕따를 당하죠. 다른 직원들한테 너는 안 그럴꺼 같아?” (참여자 12)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이런 것을 알고 뭔가 말하면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서로 눈빛은 교환하는데 말을 하지는 않죠. 왜냐 그 일이 다 자기 일이 되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의식이 있거나 해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어떤 내 양심으로써 내 가치로써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걸 하면 그 직원한테 모든 일이 가니까. 사실은 시설종사자들은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거와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똑같이 월급이 나오고, 그거 한다고 더 주지 않는데, 내일이 되니까.” (참여자 12)

4) 지원체계의 문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방을 위한 정책은 부재하지만 그나마 사후지원체계는 갖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이후 피난처 부재

정신장애인의 경우 학대피해 이후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긴급 피난처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 외에 갈 곳이 전혀 없었다. 이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가 동의입원마저 거부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긴급 돌봄 시설에서는 학대피해자를 받아주지 않고, 쉼터는 단순 일시 보호의 기능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다른 피해로부터 방어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병원에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감금이나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더

라도 분리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정신장애인은, 저희가 한번 가정 내에서 감금행위가 일어나서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경증인 경우 약을 먹고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을 위한 곳이라 중증은 가기가 힘들고 다른 장애인 시설은 안 되고 쉼터에서 조차 안 받아줘서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은 다시 병원밖에 없어요. 가정 내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나면 갈 곳은 다시 병원인데 병원이라도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24조에 의해서 보호자 의사에 의해서 허락을 해야만 하는데 보호자가 가해자의 경우는 이것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 1)

“지속 가능한 학대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분리를 하면 일단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대 피해자 쉼터가 서울에서 한 군데 그리고 긴급돌봄시설이 총 4군데가 있는데 이 중 학대피해자 쉼터입니다. 긴급돌봄시설은 학대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긴급돌봄시설은 저희가 긴급하다고 필요해서 요청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학대피해자 쉼터도 쉼터의 기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남녀 방은 따로 있지만 같은 층, 쉼터의 기능이 일시 보호예요. 상담을 지속하고 피해자 치료나 쉼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은 없고 일시적 보호와 가해자나 다른 피해로 부터의 방어역할 기능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쉼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학대피해자쉼터가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참여자 1)

쉼터 이용 이후 갈 곳 부재 : 유기적인 연결체계 부족

성폭력쉼터의 경우 2년, 다른 장애인쉼터의 경우 단기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대를 당한 여성의 경우 유기되어 버려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거주시설로 연결하려고 하여도 받아주는 거주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다시 유기를 해야만 어딘가 갈 수 있는 체계였다. 따라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다른 시설보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쉼터에 있는 피해 장애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쉼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쉼터에 머물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기돼서 버려졌기 때문에 어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갈 곳이 연계된 기관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기관이2년인데 2년 안에 자립하라고 하지만 그게 똑같이 버리지 않으면 연계돼서 보낼 곳이 없다고 하는 이야

기는 제가 가폭 피해 여성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연계돼서 가야하는데... (중략) ... 장애인 시설에서 보내려고 해도 받아지지 않는 것이고, 보낼 곳이 없다는 것이 밖에서 버려질 수 밖에 없는, 저도 이 끈을 놓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이 가슴이 답답한데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다. 유기적인 체계가 연결된 고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였고요.” (참여자 5)

“나이가 5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될 거 같아서 알아보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전화 드리고 하지만 입소가 현재는 정원이 더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자 5)

“쉼터가 장기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데 이 쉼터에서 나오면 갈 곳이 없는거죠. 중증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적자폐성장체인 시설들이 많지만은 정원이 다 찼다고 받아주지 않고...” (참여자 1)

“그룹홈이 증증은 안 받아주고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도 안 받아줘서 피해자는 쉼터에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쉼터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시설보다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피해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갈 곳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참여자 1)

인권센터, 쉼터 등의 불필요한 인력 기준 등 현실과 괴리된 행정 기준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감수성이 더 필요함에도 온갖 자격증을 요구하는 현재의 행정 기준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다. 장애 감수성을 갖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장애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학대피해자의 경우 병리적 관점이 우세함에 따라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기관에 심리상담사, 임상병리사 등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담사, 병리사 등의 경우 장애에 대한 이해, 특히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정신적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현재 기준에 따른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기준은 필요하겠지만, 모든 인력에 대해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용자에게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사자 기준조건이라든지,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도우미가 많이 필요한데 상담사 조건, 임상병리사라든지, 이런 식의 것을 요하니까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상담사도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직업군이 되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하는 것. 사람이 인력난에 1년 이상 유경험자, 상담사 자격증이 가진자 등 실제로 그렇지 않는 사람을 해도 되는데 훌륭하게 돌아가고 참 감수성만 있어도 되는데 과한 요건을 요구하니까 시설에서 인력난도 굉장히 구인난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설에 대한 기준 조건도, 그 남아 있는 시설들도 그만 하겠다 힘들어서.” (참여자 3)

5) 정책요구

특수학교 교육 내용 개선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현재 교육내용보다는 차라리 실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거지, 청소, 세탁 등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방법, 부모역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여성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을 증진시키고 타인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교육은 여성장애인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자립생활 교육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여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과목을 늘려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해주면 좋겠다.”
(참여자 5)

“가장 필요한 것은 지적 장애인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잖아요. 일상 생활에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참여자 4)

당사자 교육의 개선 및 확대 : 정신적 장애여성의 특성 및 연령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신적 장애여성의 장애특성, 연령 등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내용의 경우 성적 욕구 등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성 관련 행위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쉬운 글, 그림 등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은 이런 힘을 기르는 힘을 기른다기 보다는 선택과 결정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참여자 6)

“안돼요. 싫어요. 교육을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주변인 교육이 일반이고 전제조건이 맞는데 주변인이 준비될 때까지 자기방어력에 관한 내용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비장애 패러다임 쪽에서 싫어요. 안돼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저 자체만으로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막상 당사자분들을 보면 그 많은 사례 중에서 싫어요 라고 한 마디를 해서 간 가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참여자 9)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일반 인식 개선 : 교육 및 홍보 필요

당사자가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학대에 대한 신고를 높임으로써 학대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요즘 학대예방의 패러다임이 당사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인을 향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지역사회의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새롭게 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TV 등을 통해 학대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그 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쳐왔던 상황을 학대로 인식하게 되고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학대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도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학대라고 인식을 못하고 구출조차도 못하는 거니까 정책해결 방안으로다가 일반인들에 대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방점으로 많이 넣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 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티켓 다방이 내 옆에 있어요. 내가 차도 마셔, 방관적 효과라서 대중적인 무관심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별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조금만 고개 돌리면 저 사람이 좀 하지 않을까 대중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3)

“주변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는 그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변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책과제라면 그런 것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6)

“예방의 패러다임은 당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인을 향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해요. 예방 패러다임 자체가 당사자에 신호를 보내라가 예방패러다임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교육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당사자에게 자기 통제를 하도록 하는데 예방 교육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 자체가 장애인 학대 패러다임이 전부 바뀌어야 돼요. 당사자한테 안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만 하는 것은 교육하는 것은 너무 이상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을 교육을 하니까. 예방 교육은 관점의 교육이기 때문에 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당사자를 향해서 주기별로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게 성교육이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주변인 교육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게.” (참여자 6)

“실제로 피해자에게 방어교육만 하게 되면 공격을 가하는 사람을 중단시키는 방식을 어떻

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참여자 6)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하죠.”
(참여자 12)

“강제여도 그렇지만 관심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항상 교육을 할 때 유도책이 뭐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여자 11)

시설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 등의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거주시설에서의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과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지킴이단 구성원들이 시설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 시설 인권지킴이단은 구조적 독립이나 운영상의 독립이 안 되고 시설 내의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시설 내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아예 외부 기관에 시설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 시설에서의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지킴이단을 만들었는데 인권지킴이단이 조금 유효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예방정책의 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 안에 종사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시설 대표와 원장과 친한 사람이 인권지킴이 단으로 들어와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 단의 구성 멤버를 강화시켜내고 종사자가 해당시설의 직원을 교육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참여자 10)

“종사자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이잖아요. 관계성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

더러구요. 내적 갈등이 좀 있는 분들이 있고 외부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감시 기능으로써 인권지킴이 단이 활성화 되어 으시다면 여기 샘플을 좀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 (참여자 6)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한다하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었는데 열 받아서 온거예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전혀 설문을 할 수 가 없는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하고 종사자들이 대략하는 식에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는 부서 직원이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보고하는 식이죠. ” (참여자 11)

가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정신적 장애여성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함에 따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기다 보니 가족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은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가족의 돌봄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이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이 상담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듦으로써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련의 학대문제는 원 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악화된 사회적 능력에 일부 기인한다. 이 때문에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원 가정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을 튼튼히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이 어딘가에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조력자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겐가 조력을 받고 어떤 조력의 시스템이 나한테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집단교육을 하던가 그런 것 보다는 상담과 조력의 창고가 내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참여자 6)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한 지원정보 공개

현재 장애인 개인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생활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에 대한 공개가 안 되다보니 장애인 본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이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할 경우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해 학대에 이르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인트라넷으로 다 토탈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어요. ... 공인인증을 받고 들어가면 나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구나 현재 나의 조건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 여건이 변하면 내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구나. ... 장애인도 앞으로 장애인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장애인한테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공되는 서비스, 장애인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면 들어가서 보면 나는 현재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내가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떤 서비스를 원한다...” (참여자 2)

장애유형별 쉼터 필요

기존 쉼터에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보니, 몸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이 서로 반목하거나 불편해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관련 편의시설이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쉬운 글 버전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함께 쉼터에서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별 쉼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체장애는 언덕이 있어서 휠체어를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안에서 지체장애인하고 반목하고...” (참여자 5)

가해자 분리 공간 필요

종사자, 주변인 등에 의한 학대도 발생하지만, 시설 내에서는 이용자 간 학대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피해자를 분리하여 쉼터 등으로 전원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거주 공간의 변화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를 전원조치하기 보다는 가해 장애인을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갈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 장애인을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료기관의 조치, 개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서 피해자 관리가 생겼을 때, 가해자의 분리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된 이용자는 어디든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용자들을 다른 곳에 전원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감추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그 이용자가 전원이 되면 전원된 이용자는 덤태기고 그 문제에 문제를 안게 되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항상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병원의 치료적인 개입을 하지만, 공간적인 분리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를 분리하잖아요. 시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분리가 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시설을 떠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거예요, 오히려 가해자를 분리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할 때가 없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보면 피해자 쉼터인 부분, 계속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쉼터가 아니라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참여자 8)

연계 시스템 또는 연계 조연 시스템 필요

정신장애인의 정신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에게 정신병원 이용의 필요성,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원체계가 없다면 여성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학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병원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기 방임과 같은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연계라든지 정신병원과의 문제라든지 중간에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시스템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 5)

성폭력상담소, 인권센터 등의 아웃리치 증대

정신적 장애여성들이 학대 등에 대해 신고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학대를 당하면서도 학대가 지속되다보니 학대를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도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정신적 장애여성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찾아가던가, 모임이나 이벤트를 통해, 관계를 맺으면서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이나 이벤트를 만들어서 동료상담원이 너 눈이 왜 그러냐? 배가 아프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사례를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신고하기 바라고 어필하기 바란다면 피해자에게 대해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쪽 있어보니까 장애인 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많이 생겼어요. 속된 말로 캠페인에 치중을 하지 작업장이라든지 아웃리치가 결여되어 있어서 예방정책이라고 하면 상담소에서 발굴하는 기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피해자를 노출시켜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치유단계 안정적인 그룹홈이나 주거지원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참여자 3)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면접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는 주로 가정과 시설 내에서 발생했는데, 주로 위계적 관계에 있을 때 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었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우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 것은 자기결정에 대한 경험은 배제당한 채, 영원한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비장애인에 비해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서 인식이 되다보니, 가해자들이 학대를 하고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학대가 지속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원체계가 충분하면 학대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지원서비스가 부족하다보니 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합위기 가정, 즉 부모와 자녀가 모두 장애인이거나 취약한 경우 학대 발생이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학대가 지속되고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받게 되는 억압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 즉 학대를 내재화하면 그 이후부터는 더욱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학대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학대방지정책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도 학대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사후대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 환경 및 예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방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 장애여성을 위한 인권교육은 아동수준에 맞춰 있는 등 교육 내용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인 교육의 경우 장애와 여성을 동시에 바라보지 못하고 여성관점 또는 장애관점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장애여성의 인권침해는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학대를 인

지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의 일이라는 인식, 신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 등에 의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후지원에 치중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성이 학대를 당한 이후 피난처로서 갈 곳이 없었다. 또한 그나마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 컴퓨터 이용 기간 이후에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상당히 많은 제언을 했다. 우선 특수학교에서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을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상생활 교육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사자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시설 외부로 전환함으로써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학대 발견 및 예방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학대 발생 이후 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별 쉼터를 설치하고, 또한 피해자만 분리하려 하지 말고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해자 분리 공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계 시스템, 아웃리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IV- 2 | 면접결과 분석 요약

구분	대주제	소주제
1	학대 실태	학대발생 장소: 가정과 시설 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계적 관계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억압
		복합적 학대
2	학대의 원인	영원한 아이로만 취급받는 교육, 자기결정 경험의 부족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서의 인식
		복합위기 가정
		활동보조 등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족
		자기방어능력 부족
		억압의 내재화
가족 내 일상적 역할에 대한 혼란		

구분	대주제	소주제
3	예방 및 신고체계의 문제	예방 정책의 부재
		예방교육 등에서 여성과 장애의 통합 부재
		정신적 여성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예방교육 내용
		당사자 인권교육의 효과성 부족
		가족문화에 따른 신고의 어려움
4	지원체계의 문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잘 안 되는 종사자들의 확대 신고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이후 갈 곳 없는 피난처
		쉼터 이용 이후 갈 곳 없음
5	정책요구	인권센터, 쉼터 등의 불필요한 인력 기준 등 현실과 괴리된 행정 기준
		특수학교 교육 내용 개선
		당사자 교육의 개선 및 확대
		장애인 확대에 대한 일반 인식 개선
		시설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
		가족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원정보 공개
		장애유형별 쉼터 필요
		가해자 분리 공간 필요
		연계 시스템 또는 연계 조연 시스템 필요
성폭력 상담소, 인권센터 등의 아웃리치 증대		

2) 시사점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피해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예방 정책 개발 및 기존 실천의 변경

학대발생 이후 사후대책에 집중하는 정책은 많지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 및 예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는 주로 당사자의 방어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특수교육 또는 서비스 실천은 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식하고 교육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자기결정에 대한 경험이 없이 타인이 결정해 주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학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및 서비스 현장에서 처음에는 미숙하겠지만 장애인이 작은 자기결정 경험부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부모로서의 역할 등 가족 내 일상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대는 위계관계 속에서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낮은 위계에 존재했다. 따라서 남성장애인,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학대, 더 위험한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실천과정에서, 사회 인식 속에서 정신적 장애여성의 위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교 정규교육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 등에 대한 처벌 또는 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교육에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업연계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의 경우 성적 욕구 등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집체교육 등은 효과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역할극, 드라마 활용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실천 경험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남성 장애인의 경우 그나마 보호자가 사회진출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학대상황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 교육 등에서 배제되고 집에만 가둬지다보니 보호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통제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제가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학대가 되고, 작은 학대에 대해 당사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학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학대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결국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여성장애인일 경우 지역사회 등 외부에서도 피해자의 학대 상황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주변에서는 학대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학대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특히 여성 장애인이면 이웃이나 친척도 다 용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키우는 것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대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신적 장애여성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이 다르지 않고 학대의 기준도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보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는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불평등한 존재로, 남성의 부속품 정도로 보는 대중의 인식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과 장애를 통합할 수 있는 학대예방교육 개발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현재 예방강사들은 성폭력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인 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와 여성을 동시에 바라보지 못하고 여성관점 또는 장애관점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장애여성의 인권침해는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예방교육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과 장애를 통합할 수 있는 학대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된 교육내용 및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성폭력예방강사 과정을 새로 만들고, 교육도 장애와 성폭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예방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주변에서 만연하고 있는 학대에 대한 신고를 높임으로써 학대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공익 광고,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의 교육, 반상회 등을 통한 교육 등이 가능하지만, 이 외에도 어떤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 해결

기관 종사자가 주변의 학대를 발견한 경우 현재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정의감에 의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신고를 한 경우 기관의 피해가 우려되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보

다 확실히 개발할 필요가 있고, 내부 고발의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일부 감경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피해자 지원 확대

심각한 학대, 지속적 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을 보면, 복합위기 가정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재 희망복지지원단, 장애인복지관 등 지원기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난감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복합위기 가정의 경우 특정 분야의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이 가정의 경우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학대 취약성이 제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 사업으로 반영하여 우선 서울시에서라도 복합위기 가정에 대한 지속적, 포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학대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적 장애여성이 학대를 당한 이후 피난처로서 갈 곳이 없었다. 또한 그나마 쉼터를 이용한 경우 쉼터 이용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따라서 분리라는 비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신적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새로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의 단기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학대받은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4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남녀가 혼재되어 있고 장애유형 별로도 혼재되어 있다 보니 장애특이적 또는 성특이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쉼터가 존재하고 있으나 전국 6개소에 불과하다. 더구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노숙인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장애인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즉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및 사회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쉼터 이용이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과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자 단기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한 정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 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하며, 신변보호를 위해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쉼터는 피해자들을 단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거주시설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과, 자립생활 훈련, 취업훈련 등의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쉼터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입소하지 않으나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V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방지 정책방안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정책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방지 정책방안

1. 정책의 기본 방향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 민감성 증진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설계의 기본 방향은 학대 피해 민감성 증진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서울시 장애인 학대 관련 사후 처리 체계에 비해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므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여성 학대 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우선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 민감성이란, 학대라는 이슈, 정신적 장애라는 장애유형, 여성이라는 장애인의 성별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로, 그 특수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누가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가?’ 와 관련해서는, 장애여성 본인, 가족,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서비스 전달자,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주체이며, 이들 각각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여성 스스로가 학대를 예방하고 확인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지식과 개입 능력 제고에 대부분의 자원을 집중하는 보호 중심의 접근법이었다면 이제는 1) 장애인에게 학대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고, 2) 피해 장애인이 변호인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3) 장애인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학대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에 자원을 집중하는 역량강화 중심의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Powers & Oswald, 2004). 물론 그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정신적 장애여성들의 역량강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단순한 사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장애여성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학대의 예방과 대응, 그리고 재발 금지를 비롯한 사후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장애여성 지원기관 등 정책전달체계의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 학대 피해자들이 이들 기관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여성 학대 예방에 있어 우리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키우고 학대 발생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용인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위의 정책지원 대상/학대방지 주체들을 한 축으로, 학대의 ‘사전 예방’ 부터 ‘적절한 대응’ 을 거쳐 ‘사후 지원’ 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을 또 한 축으로 하여 서울시 장애여성 학대예방 정책의 구조와 세부과제를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V- 1】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피해 방지 정책 과제

	사전예방 단계	확인 및 대응 단계	사후지원 및 재발방지 단계
정신적 장애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인권교육 개선 및 확대 ■ 특수학교 교육내용 개선 ■ 성인기 정신적 장애여성을 위한 성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자 쉼터 확대운영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위기가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개발·강화 ■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연계 체계화 ■ 학대피해 관련기관 아웃리치 증대 	
지역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시 불이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장애인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관계법령 개선



2. 정책 과제

1)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 예방·대처 역량 강화

■ 당사자 교육의 개선 및 확대

정신적 장애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쉽게 고립될 가능성, 타인에 의해 결정을 통제당할 가능성, 생활의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The People's Law School, 2008). 이들은 자기결정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학대에 대해서도 예방과 대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방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대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자기방어기술은 개인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 기술은 평생을 통해 발전하며 학습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된다. 자기방어기술은 개인이 성적 행동과 같은 행동에 동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때 동의는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이어야 한다. 자기방어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성에 대한 지식
- 성폭력 등 학대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언어
- 성폭력 등 학대를 찾아내거나 예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 성적 행위와 개별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 성적 접촉 등 학대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등 학대 행위를 효과적으로 거부하는데 필요한 자아존중감
- 자신의 신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통제감
-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처럼 장애인이 장래 위험을 느끼거나 학대에 대한 두려움 겪는 경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게 타인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교육, 장애인의 자기방어기술 훈련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정신적 장애여성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성인에게는 성인 연령에 맞는 내용 구성,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에게 적당한 내용과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

■ 특수학교 교육내용 개선

학대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장애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여성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수학교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장애여성들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인기 정신적 장애여성을 위한 성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신적 여성장애인들도 건강한 성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오히려 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등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여성의 건전한 성 에너지 표출과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충청복지관, 성민복지관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수정·보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2) 정신적 장애여성 가족 지원

■ 가족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가족은 학대 피해에 일정 정도 기여하기도 한다. 가족 내에서 나쁜 모델을 학습하거나 사회적 능력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가족이 튼튼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조모임과 부모교육 지원, 그리고 특히 가족이 피해 당사자를 지지하고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들이 학대 가능성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합위기 가정 지원 강화

위의 가족지원에 더하여, 정신적 장애여성의 부모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학대에 대응하고 지지할 힘이 부족하여 더욱 취약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의 학대 예방·대처 역량 강화

■ 시설 종사자 학대예방교육 개발 및 강화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다수의 학대 상담 신청이 시설 종사자로부터 진행되었다. 학대에 대한 대응에 있어 시설 종사자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학대 예방을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여야 한다. 이 때 교육 내용 및 강사가 장애와 젠더에 양 쪽 모두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 발굴과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단체들이 확보 중인 인력풀을 활용하여 여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들의 장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학대예방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아래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된 장애인 학대 방지 가이드북의 목차를 소개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안내〉

- 장애인은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 학대의 원인과 현상 설명)
- 학대란 무엇인가? (유형별 학대에 대한 정의와 예시)
- 학대 원인
- 신고 저해 요인
- 장애인 학대 지표 (학대를 나타내는 증후 예시)
 - 신체적 증후
 - 행동적 증후
 - 상황적 증후

- 학대 예방 방법
- 누군가 학대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인과 대처방법 안내)
정보와 현실적 지원 제공
피해자가 혼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 법적 보조 대상 확인 (관련 법률 안내)
- 시스템 변화! (신고의 중요성 강조 및 환경 변화의 필요성 명시)
- 학대피해자를 위한 기관 및 사이트 안내

자료: The People's Law School, 2008

■ 지역사회 단위 사회복지기관의 학대발견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장애인복지팀을 신고받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공식적인 학대발견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대응능력을 높인다.

또한 2016년부터 각 시·도에 설립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권익옹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17년 각 시·도에 설립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여성의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를 인지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인권침해의 내용이 위중하거나 학대에 가까운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권익옹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센터는 주로 서비스 제공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즉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의 자기결정 침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못 받는 억울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권익옹호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확보

인권지킴이단이 실제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구성에서 해당 시설과 이해를 같이하는 인사들만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정보연계 체계화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관련된 모든 기관, 즉 상담 시설, 경찰, 정신병원이 상시적인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상호간 정보 및 피해자 대상 정보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피해 관련기관 아웃리치 증대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인권센터 등의 기존 장애인지원기관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학대사례 예방과 발굴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소 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지원한다.

■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자 쉼터 확대 운영

정신적 장애여성 학대 피해자들의 장애유형, 성별, 피해형태를 모두 고려한 단기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치유와 자립준비를 돕도록 한다. 기존 시설에 대한 인력 지원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여성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장애인 학대 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 강화

장애여성에 대한 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학대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여성 피해자를 지지·지원하는 이웃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강사들을 활용하여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것과 동시에, 다수 대중에게 확산 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한다.

이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 관련 시설의 장애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간의 접촉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신고 시 불이익 방지

위의 시민교육 및 홍보의 내용에 학대 사례 신고의 중요성과 방법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을 절대 보장하는 장치를 고안하고, 내부 고발의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일정정도 감해주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한다.

■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실시

장애여성 학대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서론에서부터 밝혔듯이 장애인 대상의 학대 실태를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별, 장애유형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정신적 장애여성의 학대실태, 원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학대 가해자의 특성과 사후 처리 방안, 장애여성 학대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 분석 및 시민의식 제고 방안 등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장애인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서울시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장애관련 정책에서 성인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제안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장애여성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가 될 것이다.



■ 관계법령 개선

현재 서울시 학대 방지 관계 법령으로 존재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성인지적 관점의 학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 또는 장애인 학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의 6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6호는 7호가 된다. 또한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제1항의 의무적인 교육 명시 조항에서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각종 장애관련 제도 등이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함을 목적 등에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 사업)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추진전략 및 지원 관련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rown, H. (2003). Safeguarding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ainst abus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A. Res. 61-106, Annex I, U.N. GAOR, 61st Sess., Supp. No.49, at 65, U.N. Doc. 1-61-49 (2006). entered into force May 3, 2008.
- Powers, L. & Oschwald, M. (2004).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Experiences, Barriers and Prevention Strategies", Center on Self-Determination, Oregon Institute on Disability and Development,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 김성희 외(20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5.12). 「등록장애인 현황」.
- 이동석 외(2014). 「장애와 학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미현(201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개년 상담활동 분석」,
이미현(201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분석보고회 - 2013, 2014년 상담을 중심으로」
- 이미현(2015).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5년 활동보고회 자료집.
「'14년 밥집 장애인 노예' 가해자 구속」, 웰페어뉴스, 2014.10.30.
「'섬노예' 라 불린 신안 염전 노예, 5년 만에 극적 탈출」, 한국일보, 2014.2.7.
「'지적장애인 폭행·성추행' 송전원 사회복지사 기소」, 연합뉴스, 2016.5.24.
「노인복지법(2016.1.1.시행, 법률 제13646호)」 제1조의2 제4호
「아동복지법(2015.9.28.시행, 법률 제13259호, 2015.3.27., 」 제3조 제7호
「영화 '도가니' 속 실제 성폭행 교직원 구속」, 연합뉴스, 2011.2.29.
「인권침해 인강재단, 엄중한 처벌 내려야」, 에이블뉴스, 2014.6.1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14면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2015.10.8.시행
서울특별시규칙 제3416호, 2015.3.12., 일부개정.2015.3.12.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6114호, 2016.1.7., 제정. 2016.1.7.시행

Abstract

Strategies for Preventing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Dr. Young Jeong Kim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Dr. Lee Seong Mee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Dr. Lee Dongsuk

Sungkonghoe Universit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till vulnerable to abuse. Women with disabilities are twice as vulnerable to abuse, due to their gender as well as their disability. Compared to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women with autism, mental disorders,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easy targets for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 strategy th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taken toward such abuse is reactive rather than preven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abuse against women with autism, mental disorders, 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eoul and propose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such abuse.

Based on the results of an in-depth review of current policies and laws, analysis of statistics from the records of related counseling center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ersonnel and practitioners involved in the provision relief for victims, this study suggests strategies for supporting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managing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anging the local society.

To prevent abuse against these women,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strategies comprised of various measur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reflecting the specific needs of these women,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and support system for the women's families (including special care for parents who have disabilities as well),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institution staff, reinforcement of the monitoring of care-providing institutions, and promotion of public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of the issue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face.

Key Words: Abuse, Women with disabilities, Mental disabilities, Sexual violence

2016 정책연구 - 10

장애여성 확대예방 정책방안 연구 : 서울시 정신적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김영정, 이승미, 이동석

발행일 2016. 12. 30.

인쇄처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기업

발간등록번호 979-11-85624-89-1(93330)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